

## ▶ 목 차 ◀

|                                       |    |
|---------------------------------------|----|
| <b>I . 투자 여건</b> .....                | 5  |
| <b>II . 투자유치 제도</b> .....             | 15 |
| <b>III . 법인 설립</b> .....              | 29 |
| <b>IV . 연락사무소 설립</b> .....            | 45 |
| <b>V . 조세 제도</b> .....                | 46 |
| <b>VI . 노무 관리</b> .....               | 56 |
| <b>VII . 기타 정보</b> .....              | 65 |
| <b>&lt;부록&gt; 투자 법령 및 관련 자료</b> ..... | 75 |

## 성공적인 투자진출을 위한 TIP



###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준비는 필수

해외 진출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 투자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한 타당성 조사과정이 심도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 사전 투자환경 분석은 크게 투자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을 포함한 일반 환경과 투자 관련 규제 및 정책 등의 규제환경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투자환경의 일반적 요소를 분석하여 투자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할 수 있다.



### 현지 정보 입수가 중요

정보수집 시 실제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므로 현지 정보에 중점을 두고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을 방문하여 현지 영업 경험담 및 조언을 청취하는 것이 좋다.



### 캐나다 산업단지를 적절히 활용

캐나다의 산업단지는 특정 산업별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지방정부인 시(市)에서 관리하는 시 공단지역(Industrial Zone)과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공단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민간공단이다. 외국기업이 특정도시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등의 특혜는 없다. 그렇지만 연방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 지원제도,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제도 등 각종 기업 활동 지원제도에 대해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부의 대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신청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받게 된다.

## I. 투자 여건

### 1. 투자 환경

- 캐나다는 "사업에 개방적인 나라"로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선호되는 투자 대상국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는 캐나다 국내시장의 규모나 성장률이 타국에 비해 월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캐나다가 세계무역의 기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제 설립 이후 캐나다는 인구 4억(경제 총생산액 11조 달러)에 달하는 북미시장의 한 축이며, 이스라엘, 칠레 등과도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있고, WTO의 영향력 있는 회원국으로서 국제 무역장벽들을 허물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KPMG가 2006년도에 발표한 "Competitive Alternatives, KPMG's Guide to International Business Costs"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미국을 기준으로 한 비용지수 비교에서 싱가포르 다음으로 우수한 비용대비 생산성을 나타냈음(아래 표 참조)

### <국가별 전반적 분석결과>

| 산업 분야     | 업종                        | 비용 지수 (순위) |           |           |           |           |    |          |           |           |          |
|-----------|---------------------------|------------|-----------|-----------|-----------|-----------|----|----------|-----------|-----------|----------|
|           |                           | 프랑스        | 독일        | 유월        | 이탈리아      | 네덜란드      | 영국 | 캐나다      | 미국        | 일본        | 싱가포르     |
| 제조업       |                           |            |           |           |           |           |    |          |           |           |          |
| 항공우주      | 항공기 부품                    | 94.8 (3)   | 106.5 (8) | 97.3 (5)  | 95.9 (4)  | 97.5 (6)  |    | 93.5 (2) | 100.0 (7) | 108.5 (9) | 74.3 (1) |
| 농업·수산물    | 식품 가공 <sup>2</sup>        | 95.3 (3)   | 101.2 (8) | 96.9 (6)  | 95.0 (2)  | 95.9 (4)  |    | 96.0 (5) | 100.0 (7) | 104.5 (9) | 84.3 (1) |
| 자동차       | 자동차 부품                    | 93.7 (2)   | 105.3 (8) | 95.9 (6)  | 94.3 (3)  | 95.5 (5)  |    | 94.9 (4) | 100.0 (7) | 108.7 (9) | 76.4 (1) |
| 화학        | 화학 제품 <sup>2</sup>        | 97.8 (4)   | 106.3 (9) | 98.9 (5)  | 96.8 (3)  | 99.2 (6)  |    | 95.5 (2) | 100.0 (7) | 101.2 (8) | 86.3 (1) |
| 전자        | 전자 부품 <sup>2</sup>        | 99.9 (4)   | 111.8 (9) | 102.1 (6) | 99.6 (3)  | 103.4 (7) |    | 96.6 (2) | 100.0 (5) | 111.0 (8) | 81.9 (1) |
| 의료장비      | 의료장비 제조                   | 96.6 (3)   | 107.2 (9) | 98.5 (6)  | 97.4 (4)  | 98.4 (5)  |    | 95.9 (2) | 100.0 (7) | 106.1 (8) | 81.4 (1) |
| 금속 부품     | 금속 기계 <sup>2</sup>        | 93.4 (2)   | 105.2 (8) | 95.6 (6)  | 94.1 (3)  | 94.9 (5)  |    | 94.8 (4) | 100.0 (7) | 109.3 (9) | 74.4 (1) |
| 제약업       | 의약품 <sup>2</sup>          | 96.6 (3)   | 105.4 (9) | 98.1 (5)  | 97.1 (4)  | 98.2 (6)  |    | 95.6 (2) | 100.0 (7) | 105.1 (8) | 83.9 (1) |
| 소프트웨어     | 컴퓨터 소프트웨어 <sup>2</sup>    | 92.2 (2)   | 103.7 (8) | 95.5 (6)  | 92.8 (3)  | 93.6 (4)  |    | 95.5 (5) | 100.0 (7) | 106.5 (9) | 77.0 (1) |
| 정밀 기계     | 정밀 부품                     | 92.5 (3)   | 106.5 (8) | 95.2 (4)  | 95.5 (6)  | 95.3 (5)  |    | 92.0 (2) | 100.0 (7) | 110.8 (9) | 67.2 (1) |
| 통신        | 통신 장비                     | 98.7 (3)   | 104.6 (9) | 100.1 (7) | 99.1 (4)  | 99.9 (5)  |    | 97.5 (2) | 100.0 (6) | 104.6 (8) | 89.3 (1) |
| 연구 개발     |                           |            |           |           |           |           |    |          |           |           |          |
| 생물 의학     | 생체 의학 연구 개발 <sup>2</sup>  | 94.2 (4)   | 113.4 (9) | 97.0 (5)  | 90.5 (3)  | 100.2 (7) |    | 86.9 (2) | 100.0 (6) | 108.2 (8) | 73.3 (1) |
| 임상 실험     | 임상 실험 관리 <sup>2</sup>     | 85.9 (4)   | 116.2 (9) | 94.0 (6)  | 77.7 (2)  | 91.8 (5)  |    | 84.0 (3) | 100.0 (6) | 95.5 (7)  | 63.2 (1) |
| 제출 시험     | 전자 시스템 개발/시험 <sup>2</sup> | 86.7 (3)   | 105.1 (9) | 89.0 (5)  | 84.3 (2)  | 93.9 (6)  |    | 88.5 (4) | 100.0 (7) | 101.3 (8) | 65.5 (1) |
| 소프트웨어     |                           |            |           |           |           |           |    |          |           |           |          |
| 소프트웨어 설계  | 고급 소프트웨어 <sup>2</sup>     | 97.0 (4)   | 109.6 (9) | 101.0 (8) | 95.5 (3)  | 99.0 (5)  |    | 94.0 (2) | 100.0 (6) | 100.7 (7) | 70.7 (1) |
| 웹 및 멀티미디어 | 인터넷 개발 <sup>2</sup>       | 94.7 (3)   | 109.5 (9) | 96.5 (4)  | 96.5 (5)  | 99.0 (6)  |    | 93.8 (2) | 100.0 (7) | 102.0 (8) | 67.4 (1) |
| 기밀 서비스    |                           |            |           |           |           |           |    |          |           |           |          |
| 비즈니스를 센터  | 금융 서비스 센터 <sup>2</sup>    | 101.8 (4)  | 125.9 (8) | 105.9 (5) | 107.9 (7) | 106.3 (6) |    | 94.7 (2) | 100.0 (3) | 134.8 (9) | 71.4 (1) |
| 전반적 결과    | 전반적 결과 <sup>2</sup>       | 95.6 (3)   | 107.4 (9) | 97.8 (5)  | 95.7 (4)  | 98.1 (6)  |    | 94.5 (2) | 100.0 (7) | 106.9 (8) | 77.7 (1) |

주) 미국의 수치를 100으로 하여 각국의 비용수준을 지수화함

자료원: Competitive Alternatives, KPMG's Guide to International Business Costs (2006)

- 동 보고서는 17개 산업분야(제조업 12개 분야, 연구개발 3개 분야, 소프트웨어 2개 분야, 기업서비스 1개 분야)를 대상으로 노동력, 세금, 운송비, 에너지비용, 기반시설 이용료 등 각 부문별로 설정된 총 27개 비용요소를 9개국 129개의 도시별로 비교하였음
- 조사 결과 캐나다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G7 국가 중에서 각 사업군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비용을 지출하는 국가로 나타났으며, 미국의 주요도시와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평균 5.5% 정도 비용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에 투자하기 적합한 10가지 이유
  - 기업활동을 하기에 좋은 사업 환경
  - 높은 교육수준에서 비롯된 고급인력의 보유
  -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 근접한 지리적 여건
  - 효율적인 경제기반
  - 연구개발에 협조적인 환경
  -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낮은 수준의 지역비용
  - 인건비와 혜택비용의 경쟁력
  - 세계적 수준의 기업서비스
  - 풍부한 국제비즈니스 인력
  - 건전한 산업관계
- 과거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의 비율이 높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국익 부합여부 평가와 같은 일정한 규제조치를 시행하였음
- 그러나 1985년 캐나다는 '캐나다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을 제정면서 캐나다가 보다 "사업에 개방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1994년의 NAFTA 체결로 인해 역내국 간의 투자는 더욱 자유로워졌음

- 캐나다 투자법령은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거래에 대한 신고 외에 특별한 규제를 가하지 않음

## 2. 대 캐나다 투자동향

### 가. 외국기업 투자동향

#### ■ 외국기업 투자현황

- 2006년 3/4분기까지 외국기업의 대 캐나다 투자 누적액은 4,478억 캐나다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1990년 1,309억 달러보다 2.5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5천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몇 년간 캐나다의 투자유치는 사스, 광우병, 캐나다화 평가 절상 등의 단기적 영향과 전체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 정체를 나타냈었으나, 2004년 이후 캐나다 내수경기가 살아나면서 외국인투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 특히 에너지 자원 개발 및 대형 건설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의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고, 활발한 내수경기에 힘입어 외투기업들이 수익을 재투자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첨단산업에서 2004년부터 외국기업의 캐나다 기업 인수(M&A)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대 캐나다 외국인투자가 늘고 있음

#### <연도별 대 캐나다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 연도  | 1980 | 1990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br>3분기 |
|-----|------|-------|-------|-------|-------|-------|-------|-------|-------------|
| 투자액 | 64.7 | 130.9 | 319.1 | 340.4 | 356.8 | 364.7 | 380.9 | 415.6 | 447.8       |

주) 누적액 기준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 업종별 외국인투자 현황

- 현재까지의 대 캐나다 외국인투자의 업종별 동향을 보면 에너지 산업과 금융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전기, 전자 및 통신 등 첨단 지식기반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연평균 증감율(1990~2005년)>

| 구분           | 증감율(%)     | 비중(%)        |
|--------------|------------|--------------|
| 전기/전자        | 13.4       | 6.7          |
| 광업/에너지       | 12.0       | 19.7         |
| 서비스/소매       | 11.3       | 10.1         |
| 통신           | 10.6       | 2.0          |
| 금융/보험        | 10.1       | 21.4         |
| 운송기기         | 9.2        | 8.6          |
| 식품/음료/담배     | 8.7        | 5.8          |
| 철강           | 8.5        | 6.4          |
| 기계장비         | 8.0        | 3.7          |
| 섬유/화학        | 8.0        | 9.9          |
| 건설/건축        | 6.2        | 2.5          |
| 목재/펄프        | 3.6        | 3.2          |
| <b>캐나다전체</b> | <b>9.0</b> | <b>100.0</b> |

자료원: Invest in Canada, 비중은 2005년 기준

# <연도별/산업별 캐나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 연도   | 목재/<br>펄프 | 광업및<br>에너지 | 기계/<br>자동차 | 금융업    | 서비스/<br>소매업 | 기타      | 전체산업    |
|------|-----------|------------|------------|--------|-------------|---------|---------|
| 1993 | 9,109     | 30,846     | 20,641     | 26,685 | 11,010      | 43,203  | 141,493 |
| 1994 | 9,598     | 29,959     | 24,638     | 28,119 | 14,417      | 47,864  | 154,594 |
| 1995 | 10,010    | 29,061     | 25,305     | 29,086 | 16,885      | 57,820  | 168,167 |
| 1996 | 10,206    | 31,799     | 25,366     | 33,506 | 18,852      | 62,399  | 182,126 |
| 1997 | 12,595    | 33,923     | 28,043     | 35,781 | 19,460      | 64,476  | 194,277 |
| 1998 | 13,487    | 38,651     | 30,029     | 40,787 | 21,642      | 74,793  | 219,389 |
| 1999 | 15,345    | 42,884     | 30,563     | 52,755 | 23,462      | 87,555  | 252,563 |
| 2000 | 16,384    | 56,305     | 43,647     | 53,965 | 25,367      | 123,447 | 319,116 |
| 2001 | 14,898    | 75,402     | 46,460     | 67,725 | 25,245      | 110,698 | 340,429 |
| 2002 | 15,066    | 83,821     | 49,825     | 65,318 | 28,873      | 113,917 | 356,819 |
| 2003 | 15,127    | 83,820     | 47,475     | 73,408 | 30,759      | 114,120 | 364,708 |
| 2004 | 14,010    | 89,633     | 51,899     | 85,787 | 35,473      | 104,148 | 380,951 |
| 2005 | 13,474    | 108,320    | 51,128     | 89,107 | 41,943      | 111,588 | 415,561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 주요국별 외국인투자 현황

- 미국은 대 캐나다 최대 투자국으로 2004년 기준 전체 투자금액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와 일본이 뒤따르고 있음
-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과 홍콩만이 유일하게 대 캐나다 상위 10대 투자국에 포함되어 있음

# <주요 국별 대 캐나다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단위: 십억 캐나다달러)

| 국가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미국   | 219.9 | 231.6 | 235.6 | 248.5 | 266.5 |
| 영국   | 26.9  | 27.6  | 27.1  | 27.4  | 29.9  |
| 프랑스  | 31.5  | 31.6  | 31.8  | 27.8  | 28.4  |
| 네덜란드 | 13.8  | 14.6  | 17.0  | 19.4  | 21.7  |
| 일본   | 7.9   | 9.3   | 9.9   | 10.2  | 10.8  |
| 스위스  | 6.4   | 6.9   | 6.8   | 7.7   | 13.0  |
| 독일   | 6.2   | 6.8   | 7.1   | 7.6   | 9.3   |
| 홍콩   | 3.9   | 4.1   | 4.7   | 5.2   | 6.3   |
| 총계   | 340.4 | 356.8 | 364.8 | 380.9 | 415.6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 아시아 국가의 대 캐나다 직접투자 현황

- 아시아의 경우 일본, 홍콩, 호주, 한국이 주요 투자국으로 그동안 전체 아시아 국가의 대 캐나다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2년부터 중국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아시아 국가 중 제5위의 투자국으로 발전했음
- 한편 캐나다에 가장 일찍 진출한 일본은 미국과 서유럽국가들과 더불어 주요 투자국으로 일정 수준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1997년 중국에 반환되는 시기 전후로 홍콩의 자본 중 상당 부분이 캐나다로 유입되며 홍콩의 대 캐나다 투자가 급증



# <아시아 주요국가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 국가명       | 1980       | 1990         | 2002          | 2003          | 2004          | 2005          |
|-----------|------------|--------------|---------------|---------------|---------------|---------------|
| 일 본       | 605        | 5,222        | 9,305         | 9,890         | 10,247        | 10,804        |
| 홍 콩       | 51         | 1,374        | 4,135         | 4,688         | 5,189         | 6,274         |
| 호 주       | 74         | 758          | 1,541         | 1,392         | 1,747         | 1,644         |
| 한 국       | -          | 312          | 274           | 336           | 360           | 364           |
| 중 국       | -          | -            | 196           | 217           | 143           | 1,362         |
| 대 만       | -          | 19           | 108           | 111           | 115           | 120           |
| 말레이시아     | -          | -            | 119           | 119           | 112           | 116           |
| 인 도       | -          | -            | 31            | 59            | 92            | 145           |
| 뉴질랜드      | -          | -            | 99            | 48            | 43            | 44            |
| 싱가포르      | -          | 88           | 77            | 45            | 45            | 47            |
| 태 국       | -          | -            | 3             | 2             | 1             | 2             |
| 필리핀       | -          | -            | 1             | 1             | 1             | 2             |
| <b>합계</b> | <b>730</b> | <b>7,773</b> | <b>15,889</b> | <b>16,908</b> | <b>18,095</b> | <b>20,924</b> |

자료원: 캐나다 통계청

## ● 일본

- 일본은 1960년대부터 가전제품, 자동차, 기계 등을 중심으로 가장 빨리 진출했으며, 한국과 중국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투자 규모면이나 투자대상 분야 면에서 월등함
- 주요 투자분야는 유통/무역, 제조업, 금융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현지생산을 위한 진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최근 일본기업 대 캐나다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 기업명                          | 투자규모    | 투자지역    | 비고              |
|------------------------------|---------|---------|-----------------|
| Bridgestone Firestone Canada | 49.8    | Quebec  | 생산라인 업그레이드      |
| Amino Corporation            | 10~25   | Ontario | 공장 증축           |
| Toyota Canada                | 25~50   | BC      | 생산라인 확장 및 업그레이드 |
| Toyota Canada                | 800~900 | Ontario | 생산공장 설립         |
| Rogers Foods                 | 10~25   | BC      | 제분소 설립          |
| Transfreight                 | -       | Quebec  | 물류센터 설립         |
| Musashi Auto Parts           | -       | Ontario | 생산라인 증축         |
| Omron Dualtec Automotive     | 1~25    | Ontario | 생산공장 설립         |

자료원: Invest in Canada

#### ● 중국 및 홍콩

- 중국과 홍콩의 대 캐나다 투자는 일본과 달리 제조업 중심이 아닌 건설 프로젝트 및 자원개발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허스키사를 중심으로 중국계 기업들이 해외 자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후 중국의 대 캐나다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홍콩 리카싱 그룹의 허스키 에너지사(Husky Energy)는 최근 서부 캐나다 알버타주 오일샌드 개발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목재, 석유, 광물 등 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

### <최근 중국기업 대 캐나다 투자현황>

(단위: 백만 캐나다달러)

| 기업명                         | 투자규모    | 투자지역         | 비고         |
|-----------------------------|---------|--------------|------------|
| Husky Energy                | 10,000  | Alberta      | 오일샌드 개발    |
| Husky Oil                   | 2,300   | Newfoundland | 유전 개발      |
| Husky Energy                | 500~600 | Alberta      | 오일샌드 개발    |
| Shangri-La Hotels & Resorts | -       | BC           | 호텔         |
| A1 Soybean                  | 3~5     | Saskatchewan | 생산라인 업그레이드 |
| Viva Magnetics              | 25~50   | Ontario      | 생산공장 설립    |
| Crosston Rubber             | 5       | Quebec       | 생산공장 설립    |

자료원: Invest in Canada

### 나. 우리기업의 대 캐나다 투자동향

#### ■ 투자동향

- 한국의 대 캐나다 투자는 1968~2006년 기간 중 363건 25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2006년에는 오일샌드 및 광물자원 개발투자, 부동산 투자 등에 힘입어 8억 9,900만 달러에 달했음.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의 제조업체를 들 수 있으며, 최근 석유공사, 광업진흥공사 등에 의한 자원 및 에너지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대 캐나다 투자현황(신고기준)>

(단위: 백만 달러, 건)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누계    |
|-----------|------|------|------|------|-------|
| 대 캐나다 투자액 | 36   | 42   | 46   | 899  | 2,561 |
| 건 수       | 25   | 33   | 31   | 77   | 363   |

자료원: 한국 수출입은행

## <한국의 산업별 대 캐나다 투자>

(단위: 백만 달러, 천)

| 업종          | 2004      |           | 2005      |           | 2006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농림어업        | 2         | 1.2       | 1         | 0.6       | 0         | 1.2        |
| 광업          | 2         | 29.8      | 0         | 10.5      | 4         | 766.8      |
| 제조업         | 4         | 1.3       | 8         | 4.9       | 11        | 41         |
| 건설업         | 1         | 0.6       | 0         | 0         | 10        | 21.8       |
| 도소매업        | 6         | 1.3       | 8         | 3.5       | 11        | 18.5       |
| 운수창고업       | 1         | 0.4       | 1         | 0.6       | 2         | 1.3        |
| 통신업         | 0         | 0         | 0         | 0         | 0         | 0          |
| 숙박음식업       | 8         | 3.3       | 4         | 1         | 15        | 19.5       |
| 서비스업        | 7         | 2.3       | 6         | 3.8       | 17        | 15.6       |
| 부동산업        | 2         | 1.7       | 3         | 21.3      | 7         | 12.8       |
| <b>총투자액</b> | <b>33</b> | <b>42</b> | <b>31</b> | <b>46</b> | <b>77</b> | <b>899</b> |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신고기준)

### ■ 주요 우리기업의 대 캐나다 투자 사례

- 석유공사 (2006년, 2억 7,250만 달러)
  - 캐나다 오일샌드 개발 투자
  - 투자지역: Black Gold Oilsands, Alberta
- 기아자동차 (2004년)
  - 산업: 자동차
  - 투자지역: Mississauga, Ontario
- 한라공조 (2003년, 500만 캐나다 달러)
  -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인 비스테온사와 합작, 자동차 관련부품 생산
  - 투자지역: Belleville, Ontario

## II. 투자유치 제도

### 1. 캐나다 투자법 개요

- 전술한 바와 같이 1985년 캐나다는 '캐나다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을 제정하면서 과거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부 제한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사업에 개방적인 국가"라고 선언
- 캐나다 투자법령은 국내 및 해외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거래에 대한 신고 외에 특별한 규제를 가하지 않음
- 하지만 일부 분야의 투자활동에 관해서는 정부의 검토위원회가 개입하고 있으며, 주로 캐나다 투자법령과 연방법에 명시된 특별 조항에 의해 규제를 받음 (하기 상술)
- 사업 이외의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는 신고절차와 검토과정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제외되지 않은 대부분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캐나다 투자법령은 외국인투자자들이 30일 내에 캐나다 산업부에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대규모의 투자에 대해 산업부는 제한여건의 여부를 검토하며 특정 투자가 캐나다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45일 내에 장관에게 1차 보고를 함. 장관은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됨
- WTO 회원국의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기준
  - WTO 회원국의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관대한 편으로 캐나다는 WTO 체제를 준수하려는 목적 하에 기업인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였음

- 경영권 인수의 경우 투자액이 2007년 기준 2억 8,100만 캐나다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특정 부문 간접 투자의 경우에는 심의 자체를 요구하지 않음
-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자산의 규모가 500만 캐나다달러 이하인 캐나다 기업의 경영권 획득을 위한 기업인수의 경우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캐나다 기업의 경영권 획득이 모회사의 인수를 통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이 강화됨
- 인수하려는 기업의 자산 규모가 5,000만 캐나다달러 이하이거나 인수금액이 그 기업 자산 총액의 절반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의 핵심산업 부분의 투자에 적용되는 기준
  - 하기 “투자제한 분야” 참조
- 기타 해외투자에 적용되는 기준
  - 하기 “투자제한 분야” 참조

## 2. 투자장려 분야

- 연방정부 산하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Invest in Canada에서 투자를 장려하는 주요 산업분야는 항공우주산업, 농업식품, 자동차산업 등 모두 10개 분야로 다른 분야보다 조세, 인센티브 등에 있어서 우대를 받음

### ■ 항공우주산업

-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생산규모
- 미국 대비 7.1% 수준의 낮은 생산비용

- 고급인력 및 첨단 R&D 센터 포진
- 세계 주도기업들 소재
- 주요기업
  - Bombardier Aerospace: 3대 항공기 전문 제조업체
  - Pratt & Whitney Canada: 소형 가스터빈 엔진 생산업체
  - CAE: 항공 시뮬레이터 개발업체
  - Bell Helicopter Canada: 헬리콥터 전문 제조업체

## ■ 농수산업

- 세계 4대 농수산 수출국
- 북미시장의 교두보 역할
- 낮은 생산비용, 첨단 농업기술 보유

##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 캐나다 온타리오주 북미 자동차산업 새로운 메카로 부상
- 자동차 1대당 생산비용 미국의 80~85%

## ■ 생명공학/의약품

- 생명공학 분야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 보유
- 근로자 1인당 R&D 지출 1위
- 2004년 기준 기업수 417개사로 미국에 이어 2번째

## ■ 석유화학

- 정부지원: 낮은 세율, R&D 지원
- 캐나다 최대 제조 산업 중 하나
- 해외 주요기업의 제조 시설 및 R&D 시설 소재

##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뛰어난 IT산업 인프라, G7국가 중 2위
- 연평균 9.2%의 빠른 성장율
- 고급인력 확보 용이

## ■ 천연자원

- 세계 3대 자원강국, 20여종에 달하는 10위권 생산 자원 보유
- 세계 담수량의 1/3을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 오일샌드 포함 총 원유 보유하고 1,789억 배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규모
- 자원개발 관련 혁신기술 및 첨단시설 보유

## ■ 환경산업

- 세계적인 첨단 환경기술 보유: Membrane Systems, UV Technology, Fuel Cell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분야
- 연방정부 지원, 각 주 소재 환경협회 및 대학 중심의 유기적인 산합협동

## ■ 합성수지

- G7 국가 중 가장 낮은 생산비용
- 세계 2위의 금형 수출국이며, 7번째로 큰 합성수지 관련 기계 및 장치시설 수출국
- 고급인력 및 풍부한 노동력 보유



### 3. 투자 제한 분야

#### ■ 핵심 국가산업

- 캐나다는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투자 개방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요 국가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매우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특정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소유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음
- 캐나다 투자법은 금융업, 운송업, 우라늄 생산, 문화산업 등 4개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특별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상기 4개 분야에 대한 직접인수 형식의 투자액수는 WTO 회원 국가의 투자가라 할지라도 500만 캐나다달러로 제한되며 간접인수 형식의 투자액수는 5,000만 캐나다달러에 한하게 됨

#### ■ 문화산업

- 투자제한 산업 중 문화산업은 캐나다의 독창적인 문화형성에 크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각별하게 보호되고 있음
- 문화산업은 출판업, 영화산업, 음악산업 등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와 투자는 캐나다 투자법에 의해 검토 대상으로 간주됨
- 또한 캐나다 투자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투자법에도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인 인수와 투자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 우라늄 생산

- 자원 투자의 경우 캐나다 정부는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라늄 생산에 있어서는 국가보안,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감안하여 제한을 두고 있음

- 그러나 우라늄 광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경우도 과거 외국인 소유 지분한도를 33%로 제한하였던 것을 49%로 완화시켰고 우라늄 탐사 프로젝트인 경우 상기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 지방별 투자제한

- 대부분의 캐나다의 지방자치지역은 외국인의 관할지역내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해당 주의 일부 근간 산업에 대해서는 주정부 역시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조치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농업토지 매입에 대한 특별세 부과조치나 출판업과 같은 문화사업에 대한 특별법 등이 있음

### 4. NAFTA 지역 국가의 투자

- NAFTA 협정에 의해 미국과 멕시코 국적의 투자자들은 캐나다내 투자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NAFTA 소속 국가의 기업은 실제 소유권과는 무관하게 동 협정의 혜택을 받게 됨

### 5. 투자관련 세제 및 인센티브

#### ■ 세제

- 캐나다는 비즈니스 관련 세금이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낮은 편으로, 특히 급여와 관련된 세금(Payroll Taxes)은 G7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캐나다 정부는 2010년까지 미국기업보다 법인세를 4.5% 이상 낮추기 위해 노력 중임
- KPMG가 2006년도에 발표한 "Competitive Alternatives, KPMG's Guide to International Business Costs" 보고서에 따르

면 캐나다의 경우 유효세율이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에 이어 낮은 편에 속하며,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또한 캐나다의 조세제도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생산능력을 증가시키는 사업 활동을 우대하고 있는데, 그 예로 여러 종류의 자산에 적용되는 특별 감가상각율과 제조업 분야의 수익에 적용되는 우호적인 세금 정책 등을 들 수 있음

## ■ 인센티브

- 캐나다의 인센티브는 외국기업, 내국인기업에 상관없이 지역적인 균형발전 추구, 수입대체 생산확대, 신기술 도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외적 경쟁력 제고 및 부존자원 개발 활성화 역할을 판단하여 제공되며, 주로 연구개발 및 문화 콘텐츠 부분에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됨

### ● 연방정부 인센티브

- 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 Program / CRA  
: 기업의 R&D에 관련된 임금, 자원 및 장비에 대한 세제상의 인센티브 보조
- Industrial Research Assistance Program / NRC  
: 국가연구위원회(NRC)에서 제공하는 IRAP 기술지원 서비스
- Technology Partnerships Canada / Industry Canada  
: 혁신적이며 잠재적 이익이 높지만 위험도가 큰 R&D투자에 대해 자금지원
- BDC Venture Capital  
: BDC(캐나다중소기업은행)을 통한 벤처기업 지원

-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of Canada

- : 산학협력 연구개발 지원

- Precarn

- : Intelligence Systems분야 R&D투자에 대한 지원 펀드로 2개 이상의 회사와 1개의 대학이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시 지원

- Film Tax Credit Programs / CRA

- : 캐나다의 영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프로그램

- 주정부 인센티브

- 캐나다 각 주별 인센티브 지원 내역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요망

- [www.investincanada.gc.ca/en/982/Incentives\\_and\\_Taxes.html](http://www.investincanada.gc.ca/en/982/Incentives_and_Taxes.html)

## 6. 자국으로의 송금

-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들의 투자에서 획득한 수익을 본국으로 송금하는 것을 규제하지 않으며, 캐나다달러는 미국달러 등의 외화와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음

- 외국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원천과세는 배당금, 금리, 이윤배당, 봉급, 보너스, 서비스 비용에 대한 수수료 등에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원천과세율은 25%이지만, 최근 여러 국가와의 쌍무관세 협정을 통해 15%나 10%, 5%로 세율이 하락하였고, 원천과세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정부와 기업의 일부 채권에 대한 원천과세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9월 5일 캐나다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양

국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였음

- 배 당: 15% (현행) → 5% (25% 이상 지분), 15% (기타)
- 이 자: 15% (현행) → 10%
- 사용료: 15% (현행) → 10%

## 7. 사회간접자본

### ■ 에너지

- 캐나다는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량이 큰 국가임. 이러한 풍부한 자원의 영향으로 에너지 의존산업으로 분류되는 기초금속, 제조, 화학, 석유화학 등의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 전체적인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 수(水)자원

- 상·하수도, 식수, 공업용수의 상태는 전부 양호한 편이며, 특히 5대호 연안에 위치한 온타리오주의 경우 민물 보유량은 세계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

### ■ 교통

- 광대한 국토 면적과 함께 산맥, 호수, 하천, 삼림 지대 등의 다양한 지형이 발달되어 있는 캐나다의 가장 큰 과제는 각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락 수송수단을 확립하는 것임. 영토가 방대하고 1, 2차 산업제품의 수출이 많기 때문에 이를 지원할 효율적인 교통체계의 확립은 필수적임
- 캐나다의 주요 교통망은 5대호 주변에 집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의 교통은 불편한 편임. 1930년대에는 주요 교통망 중 철도운

송의 비중이 85%에 달했으나 1970년 후반부터는 도로운송이 철도운송을 능가하고 있음

- 현재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화물수송의 경우에는 철도, 선박, 트럭, 파이프라인 등이 이용되고 있음

## ■ 도로

- 캐나다 내 도로의 총 연장은 90만 km(연방 및 주정부 관리국도 30만 km)이며, 고속도로로는 1942~1953년에 군용도로로 완성된 알래스카 하이웨이와 1962년에 완성된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Trans Canada Highway)가 있음
- 알래스카 하이웨이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도슨크리크에서 북서쪽으로 포트세인트존, 포트넬슨, 유콘준주, 남서부의 테스린, 화이트호스 등을 지나 알래스카의 타나크로스, 빅델타, 페어뱅크스에 달하는 전장 2,440km의 고속도로임
- 트랜스 캐나다 하이웨이는 1962년에 완성되어 캐나다의 교통, 운송 체계에 새로운 동맥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의 세인트존(뉴펀들랜드주)에서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빅토리아에 이르는 최초의 캐나다 대륙횡단 고속도로(7,820 km)로서 세계 최장 고속도로이기도 함
- 대부분의 도로이용은 무료이며 전국 승객 운송의 약 90%와 화물수입의 50% 이상이 도로교통망에 의존하고 있음
- 캐나다의 화물트럭 수송량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했는데 운송업자들은 미국과의 호혜협정 체결로 북미주 전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음

## ■ 철도

- 캐나다의 철도망은 전국적으로 매우 발달되어 있으며 국민 1인당 철도길이는 세계적인 수준임
- 캐나다의 철도의 주요노선은 캐나다 남북을 가로질러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고 있으며, 남북 방향의 철도들은 각각 허드슨 만에 면한 마니토바주의 처칠과 마니토바, 제임스만에 면한 온타리오주의 무스니시, 래브라도 반도에 있는 퀘벡주의 새퍼빌까지 연결되어 있음
- 캐나다의 철도망은 2곳의 대규모 철도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캐나다 국립 철도회사(CN: Canadian National Railway)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국영 기업체였으나 1995년 민영화되었고, 캐나다 퍼시픽 철도회사(CPR: Canadian Pacific Railway)는 CN의 뒤를 잇는 민간 합자회사임
- 철도의 총 연장은 91,365km로 1974년 당시 96,400km의 최대를 기록한 후에 폐쇄되는 철도가 신설되는 철도보다 많아 전체 철도 노선의 길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넓은 면적과 낮은 인구밀도, 높은 소득수준 등의 영향으로 국내 항공 및 도로이용이 선호되고 있어, 철도망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정체된 상태임

## ■ 항공

- 캐나다는 영토가 넓고 지형이 험하며 기후의 차가 심한 편이어서 민간항공이 일찍부터 발달했음
- 에어 캐나다(Air Canada)를 포함한 국제항공사와 수백 개의 소형 항공사가 운영 중에 있으며, 68개의 대규모 공항과 관제탑이

없는 140개의 소규모 공항을 보유하고 있음

## ■ 수상교통

- 캐나다에서는 화물수송에 수상운송이 많이 이용되는 편으로, 내륙 수로 중 가장 주요 수로는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건설(1954~1959년)한 대서양과 내륙을 연결하는 세인트로렌스 5대호 수로임
- 1959년 이 수로의 개통은 미국의 17개 주와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를 비롯한 4개 주 간의 수상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여 5대호 주변의 공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중부 평야지대에서 생산되는 밀과 5대호 주위의 철광석 등이 대서양 방면으로 편리하게 수송될 수 있게 되었음
- 이 수로의 깊이는 7.9m 이상으로 대서양에서 슈페리어호(湖)까지 3,747km에 달하고 있으며, 목재, 철강 등의 운송과 관광, 여객운송 등을 위해서도 이용되고 있음

## ■ 파이프라인

- 캐나다의 파이프라인망은 1950년까지 도시간 화물수송에서 큰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그 후 석유와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과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 이를 통한 화물 수송량이 도시간 총 화물 수송량의 25%를 차지하게 되었음
- 알버타주와 사스카치완주의 유전과 가스전에서 동쪽으로 몬트리올, 남쪽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미국 북서부를 잇는 수백 km에 이르는 긴 파이프라인들이 중부평야 지대와 록키산맥 위에 건설되었음



## ■ 통신

- 통신망의 보급상태 및 송수신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며 특히 장거리 통화의 요금수준은 한국보다 저렴함
- 1990년대 들어 정보통신산업의 기반구축이 정책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캐나다의 정보통신 시설과 서비스 수준은 2000년 이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되었음

## 8. 외국인투자 형태

### ■ 개요

- 외국계 기업이 캐나다 시장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크게 연락사무소, 지사, 현지 법인 설립의 3가지로 나뉨
- 연락사무소는 다른 형태의 진출방법에 비해 최소의 법적 의무를 지니나 권리 또한 최소로 제한됨
- 현지 법인은 가장 많은 법적 의무와 권리를 지니게 되고 지사는 연락사무소와 현지 법인의 중간단계에 해당되므로, 현지 진출 목적에 가장 부합되는 형태의 진출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캐나다 진출을 위한 첫 단계임

### ■ 지사(Foreign Corporation's Branch Office in Canada)

- 캐나다 내에 지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현지에서 법인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허가만을 취득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함
- 즉 캐나다 외의 타 국가에서 법인등록이 된 외국 기업이 캐나다 각 주에서 영업권을 취득하여 외국기업의 지사로서 활동하

는 것이므로, 지사 업무에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 및 채무는 모기업에 귀속됨

- 현지법인에 비해 지사가 유리한 점은 조세의 부담이 덜하다는 것이나, 정부가 국내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법정 분쟁 시 국내기업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따라서 지사와 현지법인의 선택은 영업활동의 규모 및 목적에 좌우되며 회계·법무법인의 자문을 구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례임
-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음
  - 투자신고 및 투자사전심의
  - 업체명 조회 및 등록
  - 외래기업 면허(Extra-Provincial License) 취득
  - 사업자 등록번호(BN: Business Number) 취득 및 세무구좌 개설
  - 기타 면허 취득 및 세무구좌 개설
- 지사 설립을 추진 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외래기업 면허(Extra-Provincial License)의 취득으로, 이 면허는 당해 주 밖에서 법인 설립된 기업에게 영업을 허가하는 것임

### Ⅲ. 법인 설립

#### 1. 개관

- 캐나다 내에 외국인투자자가 현지법인(Foreign Corporation's Subsidiary)을 설립한다고 하는 것은 현지법인 등록을 통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경영권만 외국기업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임
- 캐나다에서 법인은 연방(聯邦)법인 또는 주(州)법인 중 택일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음
  - 투자신고 및 투자 사전심의
  - 업체명 조회 및 등록
  - 현지법인 설립
  - 외래기업 면허(Extra-Provincial License) 취득
  - 사업자등록번호(BN: Business Number) 취득 및 세무계좌 개설
  - 기타 면허 취득 및 세무구조 개설

#### ■ 연방(聯邦)법인 (Incorporating at the federal level)

- 캐나다 연방기업법(CBCA: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의거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캐나다 전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음
- 일부 주에서는 별도로 영업면허나 등록을 요구하기도 하나, 각 주는 연방법인이 당해 주에서 활동하는 것을 막을 권한은 없으므로 다수의 주에서 영업을 할 경우는 캐나다 연방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권장됨
- 연방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맹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연방기업법은 법인의 연간 매출이 1,000만 캐나다달러 이상

이거나 자산규모가 500만 캐나다달러를 초과할 경우 재정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공개하도록 요구되며, 재정보고서에는 현지 법인뿐만 아니라 모기업의 매출 및 자산도 공개해야 함

## ■ 주(州)법인 (Incorporating at the provincial level)

- 주별 기업법에 의거,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기업의 활동은 법인을 설립한 주에 한정되지만, 타 주에서 당해 주 외래기업(Extra-Provincial Corporation)으로서 등록하거나 면허를 취득하여 영업을 할 수 있음
- 주에 따라 외래기업의 등록(Registration)을 요구하기도 하며 면허(License)의 취득을 요구하는 주도 있음

## 2. 투자신고 및 투자 사전심의

- 캐나다는 1985년에 제정된 캐나다투자법(ICA: Investment Canada Act, [investcan.ic.gc.ca/en\\_doc\\_a.htm](http://investcan.ic.gc.ca/en_doc_a.htm))에 의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크게 완화하였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음
- 하지만 투자액수가 일정 상한선을 초과하거나 특정산업으로 분류된 경우는 사전심의가 필요함
- 투자제한액
  - 상한선 이내의 투자일 경우에는 통보대상 투자(notifiable transaction)로 분류되어 투자 전후 30일 이내에 산업부에 투자 금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도의 투자허가를 취득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투자 금액이 일정 상한선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심의대상 투자(reviewable transaction)로 분류되어 투자 이전에 산업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함

## <투자제한액의 상한선>

(단위: 캐나다달러)

| 구분   | 일반  | WTO 회원국   |
|------|-----|-----------|
| 직접인수 | 5백만 | 2억 8천 1백만 |
| 간접인수 | 5천만 | 제한 없음     |

주1) 투자대상 산업이 금융, 우라늄 생산, 운송, 문화산업일 경우에는 WTO 회원국일지라도 일반 투자제한을 적용

주2) 액수는 공식에 의해 매년 조정(2007)

### ■ 특정산업 투자제한

- 캐나다 투자법은 금융업(은행, 투자신탁, 용자, 보험 등), 운송업(항공운수, 공공교통 등), 우라늄 생산, 문화산업(텔레콤, 미디어 산업 등)에 대해서는 특별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해서는 상기WTO 회원국에 대한 특혜 투자제한액이 적용되지 않아 직접인수 500만 캐나다달러 이상, 간접인수 5,0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
- 특히 캐나다 전통문화 및 국가 주체성에 관련된 산업은 투자액수에 상관없이 필히 심의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전통문화부 장관(Minister of Canadian Heritage)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함

### ■ 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 캐나다로의 투자신고 또는 심의는 캐나다 산업부 투자심의 부서(Investment Review Division)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고 및 심의신청은 아래의 웹사이트([investcan.ic.gc.ca](http://investcan.ic.gc.ca))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기재한 후 우편 및 팩스로 송부할 수도 있음

- 캐나다 산업부 투자신고 및 심의신청 웹사이트  
- [strategis.ic.gc.ca/epic/internet/inica-lic.nsf/en/h\\_1k00010e.html](http://strategis.ic.gc.ca/epic/internet/inica-lic.nsf/en/h_1k00010e.html)

- 우편발송 주소 및 팩스 번호

- Canada of Investments
- 주소: 235 Queen Street, Room 301B East Tower, C.D. Howe Building, Ottawa, Ontario, K1A 0H5
- 팩스: (613) 996-2515

## ■ 투자신고 및 허가 절차

- 투자신고 (Notifiable Transaction의 경우)

- 상기 투자제한 액수 이내의 투자는 캐나다 산업부 투자심의부서(Investment Review Division)에 투자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기는 투자개시 전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함
- 투자 신고는 기존 캐나다 기업 인수 시(Notification to acquire control of an existing Canadian business)와 신규 법인 설립 시(Notification of establishing a new Canadian business)로 구분하여 이뤄져야 함

- 심의 신청 (Reviewable Transaction의 경우)

- 상기 투자상한액을 초과하거나 규제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경우는 투자개시 전 투자 심의부서에 심의신청(Application for review)을 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자료, 서면각서(Written Memorandum)를 별도 제출해야 함
- 산업부 내 투자심의 부서는 투자심의 신청서를 접수 후 45일 이내에 투자신청인의 투자승인 여부를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30일까지 심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그 이상 필요할 경우는 투자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함

- 심의기한(연장기간 포함) 내 승인여부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함
- 투자심의 결과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시됨
  - [strategis.ic.gc.ca/epic/internet/inica-lic.nsf/en/h\\_lk00014e.html](http://strategis.ic.gc.ca/epic/internet/inica-lic.nsf/en/h_lk00014e.html)
- 투자심의 중점 검토 사항
  - 고용증대, 자원개발, 캐나다산 부품 사용 및 서비스 활용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
  - 캐나다인의 참여도 및 가능성
  - 해당 투자의 생산성, 산업효율, 기술 진보 및 제품혁신에 미치는 효과
  - 기존 국내 기업과의 경쟁 여부
  - 연방 및 정부의 산업, 경제, 문화정책과의 조화 여부

### 3. 업체명 조회 및 등록

- 기존 상호 및 상표의 중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캐나다 내의 상호 및 상표는 NUANS(Newly Upgraded Automated Names Search: [www.nuans.com](http://www.nuans.com))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 저장되어 있음
- NUANS에 희망 상호 및 상표명을 입력하면, 이와 유사한 기존 상호/상표가 50개까지 보고서(NUANS Report)의 형태로 출력되며, 이 보고서는 조회일자로부터 통상 90일까지 유효함. 이를 담당 정부기관에 제출하면 정부에서 기존 상호와 희망 상호 간

의 상충 여부를 판단해 상호 및 상표 사용 여부를 결정함

- NUANS 보고서는 통상 기업등록(지사 및 법인 설립신청) 시 동시에 제출되나 사전에 제출하면 상호 및 상표를 사전 확보해 둘 수도 있음
- 캐나다 정부는 신청 상호/상표가 기존의 것과 유사하지 않더라도 임의의 이유를 들어 사용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NUANS 보고서를 사전 제출하면 기업등록 서류를 새로 작성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음
- 상호/상표 사전확보 기간은 보고서의 유효기간인 90일임
- NUANS 보고서 입수방법은 두 가지로 연방법인을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에는 산업부가 별도의 온라인 계정을 발급해 주며, 이 계정을 통해 NUANS 데이터베이스 조회 및 보고서 발급을 직접 할 수 있음
  - NUANS RTS(Real-Time System)로 불리는 동 시스템의 이용비용은 20캐나다달러이며 하기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 [strategis.ic.gc.ca/sc\\_mrksv/corpcdir/corpFiling/engdoc/index.html](http://strategis.ic.gc.ca/sc_mrksv/corpcdir/corpFiling/engdoc/index.html)
- 또 다른 NUANS 보고서 입수방법은 NUANS 공식 검색 대행업체(NUANS Registered Search House)를 통해 보고서를 입수하는 방법으로, 공식 검색 대행업체는 서비스요금 포함 40캐나다달러 가량을 수수료로 받음. 또한 이들 업체들은 기업등록에 대한 서류절차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기도 함. NUANS에 대한 정보와 공식 검색 대행업체 리스트는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음



#### 4. 현지법인 설립

- 캐나다 현지법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법과 주법 중 택일하여 설립할 수 있으며, 주별 법인신청 절차 및 구비조건은 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하며 연방법인 설립신청과도 흡사함

##### ■ 연방법인 설립절차

- 연방 기업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의거하여 법인을 신규 설립할 경우 동 법안의 법인신청양식 1, 3, 6 (CBCA Form 1, 3 and 6)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각 양식의 정식명과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Form 1- Articles of Incorporation  
: 법인에 관한 기본정보 (상호, 주식 배당방법 등) 기재
  - Form 3- Notice of Registered Office or Notice of Change of Registered office  
: 법인 사무실 소재지 및 관련정보 기재. 추후 소재지 변경 시에도 동일 양식으로 통보
  - Form 6- Notice of Directors or Notice of Change of Directors or Notice of Change of Address of a Present Director  
: 법인의 이사(들)에 관한 정보 기재. 추후 이사 관련 정보 변경 시에도 동일 양식으로 통보
- 상기 양식 1, 3, 6과 함께 NUANS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NUANS 보고서를 먼저 제출해 상호/상표를 사전등록을 마치면 상호사용 거부 시 새로 다른 상호/상표명으로 신청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음

- 연방법인 설립은 온라인상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상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통상의 250캐나다달러보다 저렴한 200캐나다달러이며, 온라인 신청은 Corporations Canada Online Filing Centre의 웹사이트를 통해 행해짐
-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Corporations Canada 웹사이트 또는 사무소에서 인포메이션 키트와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입수할 수 있음
- Corporations Canada Online Filing Centre:  
[strategis.ic.gc.ca/sc\\_mrksv/corpcdir/corpFiling/engdoc/index.html](http://strategis.ic.gc.ca/sc_mrksv/corpcdir/corpFiling/engdoc/index.html)
- Corporations Canada 법인설립 신청양식 및 인포메이션 키트  
[strategis.ic.gc.ca/epic/internet/incd-dgc.nsf/en/h\\_cs02141e.html](http://strategis.ic.gc.ca/epic/internet/incd-dgc.nsf/en/h_cs02141e.html)
- 법인설립 신청양식 송부처 및 연락처 (Corporations Canada)
  - Publication and Information Unit
  - Corporations Canada, Industry Canada
  - 9th Floor, Jean Edmonds Towers South
  - 365 Laurier Avenue West, ON K1A 0C8
  - 전화: (613) 941-9042
  - 수신자부담전화: 1-866-333-5556
  - 팩스: (613) 941-0601
- 지역 사무소 전화번호
  - BC주 (밴쿠버): 604-666-9875
  - 퀘벡주 (몬트리얼): 514-496-1797
  - 온타리오주 (토론토): 416-954-2714

## ■ 온타리오주(州) 법인 등록 절차

- 온타리오주에서 법인설립을 할 경우, 온타리오주 기업법(BC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의거해 신청하게 되며 동 법안의 양식 1(BCA Form 1)을 작성, 제출해야 함

- BCA Form 1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현지 법무법인, 법인설립 대행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도 있음. 신청비용은 360캐나다달러로, 연방법인 설립신청과 마찬가지로 NUANS 보고서 제출을 통한 상호/상표 등록을 같이 해야 함

· BCA Form 1 다운로드

[www.cbs.gov.on.ca/mcbs/english/4VWQQC.htm](http://www.cbs.gov.on.ca/mcbs/english/4VWQQC.htm)

- 또한 온타리오주 내 법인설립은 주정부가 지정한 아래의 온라인 신청 대행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수수료는 300캐나다달러로 할인되나 대행업체가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함

· Cyberbahn Inc: [www.cyberbahn.ca](http://www.cyberbahn.ca)

· OnCorp Direct Inc.: [www.concorp.com](http://www.concorp.com)

## ■ 브리티쉬 콜럼비아(BC)주 법인 등록 절차

-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법인 등록비용은 350 캐나다달러이며, 개인이 직접 주정부 운영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도 있고 현지 법무법인, 법인설립 대행업체 회계사무소 등을 통해 대행할 수도 있음

- 제3자가 법인등록을 대행할 경우에는 등록비용 외에도 서비스 비용이 추가됨

· BC Online: [www.corporateonline.gov.bc.ca](http://www.corporateonline.gov.bc.ca)

## 5. 외래기업 영업 면허 등록

- 캐나다의 각 주에서 타주나 연방 또는 타국법인으로 영업할 경우, 외래기업으로서 등록하거나 면허를 취득해야 함. 외래기업 등록/면허는 Extra-Provincial Registration/License로 일괄적으로 불리며, 신청절차 및 구비 요소도 각주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유사함
- 온타리오주의 경우, 캐나다 연방법인이나 캐나다 내 타주 법인의 경우 외래기업 등록을 하게 되어있으며 외국법인일 경우 외래기업 면허를 취득해야 함

### ■ 온타리오주(州) 외래기업 등록(Extra-Provincial Registration)

- 온타리오주는 기업정보법(CIA: Corporations Information Act)에 의거, 주 내에서 영업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연방이나 타주에 등록된 기업이라도 온타리오주 내에서 영업할 경우 동 법안 양식 2(CIA Form 2)를 기재해 온타리오주 내 영업개시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재 내용은 법인 주식배당 방법, 영업 목적, 소재지 등의 일반적인 정보임
- 양식은 온타리오주 소비자 및 기업서비스부(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에서 입수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기재양식은 아래의 주소로 우편 송부하거나 내방 제출하면 됨
- 외래기업 등록 양식 (CIA Form 2)  
[www.cbs.gov.on.ca/mcbs/english/4VWQQC.htm](http://www.cbs.gov.on.ca/mcbs/english/4VWQQC.htm)
- Companies and Personal Property Security Branch

- 주소: Ministry of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MCBS)  
393 University Avenue, Suite 200 (우편송부 시)  
375 University Avenue, 2nd Floor (내방 시)  
Toronto, Ontario, M5G 2M2
- 수신자부담전화: 1-800-361-3223 (in Ontario)
- 전화: (416) 314-8880
- TTY: (416) 212-1476

#### ■ 온타리오주 외래기업 면허 (Extra-Provincial License)

- 온타리오주에서 외국법인으로서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국내기업(연방 또는 타주 법인)과는 달리 외래기업법 (EPCA: Extra-Provincial Corporations Act)에 의거, 외래기업면허를 취득해야 함
- 외래기업면허 신청은 상호/상표를 새로이 등록해야 하므로 NUANS 보고서와 동반되어야 하며, 법인설립 신청 시와 마찬가지로 상호/상표를 사전 등록할 수 있음
- 필수 작성양식은 EPCA Form 1(Application for Extra-Provincial License)과 Form 2 (Appointment of Agent for Service)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Form 2에서 서비스 대리인(Agent of Service)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임. 서비스 대리인은 온타리오주 거주자 또는 상주법인임
- 외래법인 면허 신청양식 입수, 기재서류 접수 및 문의사항은 아래의 온타리오주 소비자 및 기업 서비스부에서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330 캐나다달러이고 면허 서류접수 3-4주 이후에 발급됨

#### ■ 브리티쉬 콜럼비아(BC)주 외래기업(Extra Provincial company) 설립

- 외국기업이 British Columbia(B.C.)주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Extra Provincial Company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필요서류는 하기와 같음

- Extraprovincial company 신청서(Form 13): 300캐나다달러
- Name approval form (소정서류): 약 30캐나다달러
- Certificate of good standing (Form 15)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및 Articles of Incorporation (원본 및 영문 번역본)
  - 등기소 공증필요  
(법인 증명서 및 정관으로 개정했을 경우 개정된 내용 포함)
- 서류 입수 및 제출처
  - Canada / British Columbia Business Service Centre 601 West Cordova Street, Vancouver, B.C. V6B 1G1
  - 전화: (1604) 775-5525
  - 팩스: (1604) 775-5520
  - 홈페이지: [www.smallbusinessbc.ca](http://www.smallbusinessbc.ca)
- 상세정보 (B.C. 주정부 법인 등기소)에서 입수가능
  - 주소: Registrar of Companies, 940 Blanshard Street, 2nd Floor, Victoria, B.C. V8W 3E6
  - 전화: (1250) 356-8648
  - 팩스: (1250) 356-8932

## 6.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취득 및 세무계좌 개설

- 캐나다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BN: Business Number)를 취득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지사 인가번호와는 다른 개체로 재정, 세무 업무를 이행할 때 사용됨
- 개인과 비교해 보면 법인·지사 인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사업

자등록번호는 사회보장번호라고 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번호는 연방정부번호(BN: Business Number)와 주 정부번호가 따로 있음
- 온타리오주의 경우 온타리오주 사업자등록번호를 BIN(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으로 호칭하고 있음
- 연방정부 사업자등록 (BN: Business Number)
  - 연방정부번호는 연방정부가 수거하는 기업세(Corporate Income Tax), 상품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 Tax, 부가가치세), 고용세(Payroll Deduction), 수출입관세(Import/Export Tariff) 회수의 목적으로 발행됨
  - 당해 기업 BN 하에 상기 4개 세금구좌가 개설되고 수출입을 하지 않아 관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면 관세 계좌는 개설할 필요 없음

※ BN 및 하위 조세구좌 구성의 예

- 당해 기업이 캐나다에서 고용을 하고 판매활동을 하여 이윤을 취득하나 수출입은 하지 않는 경우는 당해 기업 BN 아래 하기 3종류의 조세구좌를 개설해야 함

예) 123456789RP0001

: 123456789(사업자등록번호) RP\*(계좌종류) 0001(계좌번호)

\* 계좌종류

1) RP: 고용세 (Payroll Deduction)

2) RC: 기업세 (Corporate Income Tax)

- 3) RM: 수출입관세 (Import/Export Tariff)
- 4) RT: 상품용역세(GST: Goods and Service Tax)

- BN은 캐나다 국세청에서 신청을 받아 발급하고 있으며 작성양식은 RC 1으로 하기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
- 신청접수는 전국 국세청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우편, 팩스 또는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전화 또는 내방으로도 가능하며 국세청 연락처는 아래를 참조 바람

- RC 1 양식 다운로드

[www.cra.gc.ca/E/pbg/tf/rc1/README.html](http://www.cra.gc.ca/E/pbg/tf/rc1/README.html)

- BN 온라인 신청

[www.businessregistration-inscriptionentreprise.gc.ca/dchmf/brom/bro/start.do?language=english](http://www.businessregistration-inscriptionentreprise.gc.ca/dchmf/brom/bro/start.do?language=english)

- 캐나다 국세청 문의처

- 주소: Client Service Directorate, 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 Place Vanier, Tower A, Ottawa, ON K1A 0L5
- 전화: (1800) 959-5525

## ■ 주정부 사업자등록

- 연방정부 사업자등록 외에도 소재한 각 주 정부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는 각주정부도 판매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임

- 온타리오주(州)

- 온타리오주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BIN(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으로 부르고 있으며, 외래기업의 경우 외래기업면허 신



## 청 시 BIN이 발급됨

- 온타리오주 내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Ontario Business Registration Form 1을 작성, 수수료 60캐나다달러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사업자등록과 BIN을 발급받게 됨
- 신청은 외래기업면허를 발급하는 온타리오주 소비자 및 기업 서비스부에서 받고 있으며 동일 연락처 및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거나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음

## • 브리티쉬 콜럼비아(BC)州

- BC주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연방정부에서 운용하는 BN (Business Number)과 연동되어 연방 국세청, 주정부 재무부, 주정부 세무부 등과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일원화하고 있음
- BC주 Business Number (BN)  
예) 123456789 BT 0001  
123456789: 9단위 사업체 번호  
BT: BC주 세금 (PST, hotel room tax 등)  
0001: BC주 관련 계좌번호

## 7. 기타 면허 취득 및 세무계좌 개설

- 상기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기본 영업면허 및 세금구좌 외에도 영업종류에 따라 추가로 면허를 받거나 세금구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캐나다 온타리오주 원저에서는 소매판매업을 개설하는 경우 온타리오주 정부의 판매세(PST: Provincial Sales Tax)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원저시 정부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 온타리오 주 정부 판매세 계좌 개설은 온타리오주 재정부 (Ministry of Finance, [www.fin.gov.on.ca](http://www.fin.gov.on.ca))에서 해야 하며 시정부 사업자 등록은 각 시의 시청에서 해야 함
- 브리티쉬 콜럼비아주 판매세 계좌 개설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 Ministry of Provincial Revenue
  - 주소: Customer Service and Information Branch, Suite 800,  
36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C. V6B 6B2
  - 전화: (604) 660-4524
  - 홈페이지: [www.rev.gov.bc.ca/ctb/](http://www.rev.gov.bc.ca/ctb/)
- 이밖에 필요한 면허 및 세금 계좌는 그 종류가 상당히 많으며, 보통 관할지역 시 정부에 문의하면 시정부가 요구하는 요소와 주정부가 요구하는 요소를 함께 알려줌

#### IV. 연락사무소 설립

- 캐나다는 정식으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공식적인 사업체(Legal entity)로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구분하는 경계는 다소 모호함
- 따라서 연락사무소에 대한 정의를 임의로 내린다면 캐나다 내에 반영구적 소재지를 갖지 않고 본사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장기 출장자로 볼 수 있음
- 즉 거래는 캐나다 기업과 외국 본사 간에 이루어지며 연락사무소는 현지에서 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 연락사무소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캐나다 내에서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는 반면, 비즈니스 목적을 가진 방문객의 체류자격을 갖게 됨
- 만약 캐나다 내 외국 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캐나다 기업과 직접 상거래를 할 경우, 연간 매출이 3만 캐나다달러 이하일 경우에만 Minority Supplier(소규모 납품업체)로 구분되어 조세의 의무를 피할 수 있으며, 연간 매출이 3만 캐나다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외국 기업의 연락사무소도 세금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을 납부해야함

## V. 조세 제도

### 1. 조세제도

#### ■ 납세 의무자

- 캐나다의 납세 의무자는 캐나다 시민과 세법상의 영주권자로,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1년에 183일 이상을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에는 세법상 영주권자로 분류되어 각종 소득(근로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갖게 됨

#### ■ 세금의 종류

- 개인종합소득세 (갑근세, 불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 회사 법인세: 계산 방법은 회계 원칙 적용
- 회사 재산세: 중소기업에는 거의 적용 되지 않음
- 회사 최저세: 중소기업에는 거의 적용 되지 않음
- 주(州)별 상해 보험: 고용주 부담의 상해보험
- 원천과세: 고용인의 근로소득에서 징수
- 재산세: 시/군 에서 징수하는 지방세
- 통관세: 수입품에 대한 세금 징수
- 부가가치세: 최종소비자 부담 (한국과 대동소이)
- 판매세: 소모품에 대한 최종 소비자의 부담

#### ■ 조세행정

- 캐나다의 조세행정은 징수기관에 따라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
  - 연방정부: 소득세, 자본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회사법인세, 관세 등 징수

- 주정부: 천연자원의 이용에 대한 소득세, 소매 영업세, 자본세, 임금세 등의 세금 징수.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각 주마다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지방자치: 재산세 징수
- 이러한 3단계의 조세 제도는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들이 납세 계획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이나 기업의 납세의무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음
-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모든 소득(해외 소득 포함)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들은 캐나다 내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가짐
- 미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캐나다에서는 직접세를 부과할 권리는 주정부에 있으며, 기타의 권한은 연방정부에 있음
- 연방정부가 간접세를 부과하는 한편 주정부가 직접세를 대신 징수하여 연방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캐나다의 과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소득의 재분배'를 과세제도의 기본목표로 정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무료 국민의료보험 혜택과 최근에 확대되어 실시되는 국민연금제도 등은 캐나다 복지정책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2. 기업에 대한 세금

- 캐나다에서 설립된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은 핵심적인 기업경영과 관리가 캐나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법 상 캐나다에 주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캐나다 내에 주재하는 기업은 캐나다 내외에서 획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가지며, 비(非)주재 기업들은 캐나다 내의 소득과 토지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함

## ■ 연방소득세 (법인세)

- 과세 소득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회계원칙에 의해 산출된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총소득은 조세제도의 규칙에 따라 조정되는데, 배당금, 로얄티, 이자 소득, 자본 이득과 같은 영업외 수익도 과세 소득에 포함됨
- 캐나다 기업들은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면하기 위한 특별 혜택을 받음.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자본 이득의 75%만 과세 소득에 포함되며, 해외에서 획득한 영업외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 규정이 있음
- 기업의 운영 중에 소요하는 정당한 사업비는 대부분의 경우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자본 원가 충당금이라고 불리는 감가상각 비용도 소득에서 공제됨
- 대부분의 감가상각비는 원가의 최하 4%에서 최고 30%의 비율로 정해지는데,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4%이며, 기계류의 감가상각비는 30%임
- 첫 해의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비율의 절반 정도임
- 일부 연구개발 지출비용에 대해서는 즉시 세금 공제가 가능하며, 기타 운영에 적합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도 20%의 세금 공제가 가능함

- 오락, 여가활동이나 개인 차량의 운행에 쓰인 비용에 대한 세금 역시 기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 증빙된다면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기업은 4%의 부가세를 포함한 과세소득의 29.12%를 연방 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제조나 가공 등 분야의 소득에 대해서는 7%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22.12%의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 캐나다인이 소유한 사기업(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s : CCPC)들은 연간 영업소득 중 처음의 2만 캐나다달러에 대해서는 16%의 연방 소득세 특별 공제를 받음
- 이러한 혜택은 과세 자본이 1,000만 캐나다달러 이하인 모든 사기업들에 제공되며 과세 자본이 1,000만 캐나다달러 이상 1,500만 캐나다달러의 범위에 속하는 기업들에게는 혜택이 적어짐
  - CCPC는 비거주자가 소유하거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을 의미

## ■ 주(州) 소득세

- 주정부는 관할지역 내의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며 그 세율은 주별로 다름
- 대부분의 주정부는 제조와 가공 분야의 소득에 대한 특별 세율을 적용하며, 모든 주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일부를 공제하고 있음
- CCPC가 아닌,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연

방 소득세와 주 소득세를 합한 총 세금 부담율은 유콘州的 24.6%에서부터 사스카치완州, 마니토바州, 뉴브런즈윅州的 39.1%까지 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

## ■ 대기업세

- 연방세인 대기업세(Large Corporations Tax)는 과세 자본이 1,000만 캐나다달러가 넘는 캐나다 내의 대기업에게 징수됨
- 대기업 세율은 캐나다 내 총 소유 자본의 0.225%이며 일부기업 간 상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고 캐나다 내 상주 조직이 없는 외국인 기업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기업이 부담하는 4%의 연방 부가세는 대기업세의 액수를 줄이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음. 즉 연방 부가세가 대기업세의 부담을 초과할 경우 미래의 대기업세를 상쇄할 수 있도록 차액이 향후 7년간 연기될 수 있고 현재 시점 기준 3년 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음

## ■ 온타리오州的 최소 기업세

- 온타리오주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중 자산의 규모가 5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이거나 수입이 1,000만 캐나다달러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최소 기업세(Corporate Minimum Tax)가 적용됨
- 최소 기업세의 세율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총소득의 4%이며 기업간 상호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이중과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시킴
- 기업이 총소득의 4% 이상을 주 소득세로 납부하였을 때는 최소 기업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음



- 최소 기업세로 지불한 세금은 다른 일반 소득세에서 10년간 공제됨

## ■ 주 자본세

- 캐나다 내 5개 주에서는 자기 자본이나 유보이익을 포함한 기업 자본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음
-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마니토바주, 온타리오주의 주 자본세율은 0.3%이며, 사스카치완주의 세율은 0.6%, 퀘벡주의 세율은 0.64%임
- 세율 적용에는 자본의 최저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 기준은 사스카치완주의 경우 1,000만 캐나다달러이며 나머지 4개 주의 기준 범위는 1~2억 캐나다달러 사이임

## 3. 개인세금(소득세)

- 피고용자는 총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제한된 일부의 경우에 한해 특정 면제와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세법상 소득은 소득세 법령이 특별히 지정한 혜택을 제외한 모든 피고용자의 혜택을 포함하며, 그 중 한 예로 회사 차량의 개인사용은 과세의 적용을 받는 혜택이지만 등록된 연금제도나 개인 의료보험과 같은 고용자의 부담에 의한 혜택은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됨
- 단독으로 또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은 소득을 산정할 때 기업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함. 캐나다 주재의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개인은 특별한 대우를 받는데, 기업의 차원에서 이미 한 번 세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배당금의 재조정이 필요함

- 배당금의 총액은 25% 확대되고 개인은 배당세 공제를 받게 됨.  
캐나다에 주재하지 않는 기업의 배당금(해외 원천과세의 총합)  
은 개인 소득에 전액 반영됨
- 자본 이득의 75%는 과세소득에 포함되며, 자본 손실이 이득보다  
클 경우 미래의 자본 이득을 상쇄할 수 있도록 차액이 현시점  
이후로 연기될 수 있고 현재의 3년 전으로 당겨질 수도 있음
- 캐나다의 거주하는 개인은 50만 캐나다달러의 자본 이득에 대  
한 세금을 평생 동안 면제받을 수 있음
- 단 이는 이러한 자본 이득이 캐나다 주재 중소기업이나 농업  
재산의 지분에서 유래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개인의 주거지에  
서 취득한 자본 이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되는데, 이는 1가  
구당 1개의 주거지를 가진 경우에만 해당됨
- 특정 개인이 캐나다 거주자가 되거나 또는 반대 상황의 경우  
자본 자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특별 규정이 적용됨

#### 4. 기타 세제

##### ■ 임금세

- 연방정부는 고용 보험과 연금 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임금  
세를 징수하며 이 비용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에게 모두 부담됨
- 온타리오주, 퀘벡주, 마니토바주, 뉴펀들랜드주, 유콘준주 역시  
별도의 임금세를 징수하며, 임금세율은 임금의 규모에 따라  
0.98~4.26%의 비율로 나타남

## ■ 상품과 용역 세금(Goods and Services Tax: GST)

- 캐나다 정부는 GST라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는 유럽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임
- GST는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상품과 용역에 적용되며, 소매상을 포함한 생산과 분배망을 통한 사업은 국내 판매에 GST를 부과하지만 이러한 사업 운용에서 생기는 여타 비용과 재화 구매를 위해 지불한 GST에 대해서는 투입세 공제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최종 소비자는 완전 구매가격 내의 재화의 구매가격 전부에 대하여 세금을 지불하나, 주택매입과 같은 구매의 경우에는 부분적 환불이 가능함
- GST는 수출품, 채소류, 처방약, 의료기기, 농수산물 등과 같은 "zero 등급" (과세 대상이 아닌 등급)의 상품과 용역에는 부과되지 않지만, 구매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판매자는 재화의 구매에 포함되어 지불한 GST를 부분적으로 공제 받음
- 이는 의료, 교육, 육아, 국내금융 서비스, 법률자문 등과 같이 세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와 대비됨

## ■ 주(州)소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

- 대부분의 주에서는 소매세가 추징되지만 알버타주, 유콘주, 노스웨스트주는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품과 용역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규는 주마다 다른데, 세금은 소매상들이 징수하며 대부분의 경우 구매자는 수입세를 주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주 소매세는 퀘벡주의 6.5%에서부터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의 10%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연방정부는 연방 및 주판매

세를 통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판매세(HST: Harmonized Sales Tax)라고 불리는 단일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고자 각 주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 퀘벡주는 GST와 유사한 판매세를 부과하며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주는 판매세를 단일한 14%의 통일판매세(6%의 GST를 포함)로 대체시켰음

## ■ 관세

- 캐나다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하여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부과 규칙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음
- 캐나다는 통일된 상품 설명과 코드 시스템(HS System)을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세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무역 대상국과 비슷함
- 미국과 멕시코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기준의 적용을 받으며, NAFTA 협정은 3개국 간에 존재하는 모든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임
- 특별 혜택이 적용될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표시가 있어야 하며,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 ■ 토지 판매세

- 일부 주에서는 토지를 처분할 때 세금이 징수되는데 경우에 따라 거주자보다 비거주자에게 보다 높은 토지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음

## 5.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

- 캐나다의 비거주자는 비거주자소유의 투자회사(NRO: non-resident-owned corporation)라 불리는 특정한 형식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소득세 법령에는 이러한 기업 설립절차에 대한 요건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NRO는 캐나다 내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자본 이득과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음
- NRO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의 수준과 비슷함

## 6. 캐나다-한국간 세무 협정

- 1978년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1980년 시행)
  - 목적: 이중과세 방지
  - 대상: 양국 납세자
  - 세율: 15% 원천징세
- 2006년 9월 5일 캐나다와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투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양국간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였음
  - 배당: 15% -> 5% (25% 이상 지분), 15% (기타)
  - 이자: 15% -> 10%
  - 사용료: 15% -> 10%

## VI. 노무 관리

### 1. 노동법

- 연방정부와 주정부 모두 노동법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대부분의 캐나다 피고용자들은 노동 분쟁 시 일차적으로 주정부 노동법에 따르고 있음
- 다만 핵심 국가산업이나 2개 주 이상에 걸친 산업의 노동행정은 연방정부 노동법에 의거 조정하고 있으며, 연방정부 관할의 산업에는 철도, 항공, 정보통신, 곡물 수송, 우라늄 산업 등이 있음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노동법령은 다양한 고용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고용기준, 작업환경의 안전 및 보건, 연금, 고용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용자들의 단체 협상권은 보장되지만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노동법 관련 법률은 기본적으로 인권보호와 정당한 고용행위의 실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동 법률은 인종, 종교, 외모, 성별, 나이 등의 조건에 의해 고용이 차별화되는 것을 막고 있음
- 즉 고용자는 같은 일을 하는 남녀에게 똑같은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은 고용할 수 없으며, 고용의 최소 연령은 지역과 일의 종류에 따라 다름
- 캐나다의 모든 법적 관할권 내에는 최소한의 고용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가, 해고 등에 관한 내용이 있음

## 2. 임 금

- 1980년대 중반 이후 실업률이 감소함에 따라 1988년 이후에는 실질임금이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음
- GST(상품용역세)의 도입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한 1991년을 제외하고는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여 왔으며 실질임금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남녀간의 임금격차 철폐를 목표로 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추진은 연방 총선과 주 선거에서 쟁점공약의 하나였으며, 남녀 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평등권)는 1985년 4월 17일을 기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존재하고 있음
- 그러나 오늘날 법률적인 보장을 배경으로 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녀 간의 임금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임금수준은 산업별, 주별로 다르고,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에 의한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일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 별로 학생, 연소자, 미경험자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근로경험이 있는 성인의 최저임금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시간당 8캐나다달러 선이며, 일부 주에서는 학생, 청년 근로자, 기술 훈련생, 농민, 주부 등의 피고용자들은 특별히 정해진 임금을 받게 됨

## <주별 최저임금 현황>

(단위: 캐나다달러)

| 주(준주)명        | 최저임금 | 상세정보                                   |
|---------------|------|----------------------------------------|
| Alberta       | 7.00 | Alberta Human Resources and Employment |
| BC            | 8.00 | B.C. Ministry of Labour                |
| Manitoba      | 7.60 | Manitoba Labour                        |
| New Brunswick | 7.00 | New Brunswick Employment Standards     |
| Newfoundland  | 7.00 | Labour Relations Agency                |
| NWT           | 8.25 |                                        |
| Nova Scotia   | 7.15 | Environment and Labour                 |
| Nunavut       | 8.50 |                                        |
| Ontario       | 8.00 | Ministry of Labour                     |
| PEI           | 7.15 | Community and Cultural Affairs         |
| Quebec        | 7.75 | Commission des normes du travail       |
| Saskatchewan  | 7.55 | Saskatchewan Labour                    |
| Yukon         | 8.25 |                                        |

자료원: [canadaonline.about.com/library/bl/blminwage.htm](http://canadaonline.about.com/library/bl/blminwage.htm)

-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피고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의 최저임금과 비슷함

### 3. 노동조건

#### ■ 근로시간

-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ur Code)은 피고용자가 지정된 일당 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고용자로 하여금 일반 작업에 더욱 많은 인력을 고용함과 동시에 근로시간 외의 작업을 위해서는 시간외 노동 인력을 고용하도록



록 유도하고 있음. 또한 주당 최소한 하루는 휴업해야 함

- 연방정부 고용법의 경우 노동법에 의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노동시간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초과 시에는 초과 근무수당으로 기준액의 1.5배가 지급됨
- 하지만 기본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사항은 주별로 상이함
  - 대부분의 기업 근무시간은 주당 40~41시간으로 주 5일 근무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며 사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음

## ■ 휴가제도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최소 연간 2주의 휴가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고 근무기간이 몇 년간(보통 5년) 지속되면 연간 3주의 휴가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음
-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일반적으로 연봉의 4% 이상을 휴가비용으로,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6% 이상을 휴가비용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 캐나다는 연간 10일의 국가 공휴일을 갖고 있으며, 각주마다 연간 1일 이상의 주 공휴일을 가지고 있고, 지역마다 유급 법정 공휴일수는 다름
- 여성 피고용자는 지역에 따라 17~52주간의 무급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휴가기간은 해당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좌우되며, 휴가에서 돌아온 피고용자는 직업을 보장받을 수 있음

## ■ 해고

- 캐나다 노동법 상 고용관계는 두 가지 이유로 중단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일시적 해고 기간 포함)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임
- 정당한 해고 사유는 근로자의 능력부족 등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해고에 관한 사전 통보는 요구되지 않으며, 일시적 해고는 불경기, 구조조정, 과잉인력 상태 등에서 초래됨
-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모든 고용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통보기간을 거친 후 해고하거나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여야 함
-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피고용자가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도 사전에 고용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지며, 알버타주와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를 제외한 캐나다의 모든 행정 구역 내에서는 단체 해고 시 추가로 더 긴 통보기간을 가져야 함

## ■ 부가급부

-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캐나다의 고용자들은 법이 정한 수준 이상의 부가급부를 제공하는데, 의료보험 혜택, 치과 보험, 생명 보험, 병가, 장기간의 장애휴가 등이 그 예로, 이러한 혜택은 능력 있는 인력을 유치하고 노동력 이동을 감소하게 함

## ■ 연금제도

- 모든 고용자들은 캐나다 연금기금이나 그와 유사한 퀘벡주의 연금기금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해야 하는데, 이는 퇴직, 노동 장애, 사망 시

에 피고용자와 그의 가족에게 기본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기 위함임

-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연금을 부담하는데, 피고용자가 임금을 지급 받을 시 임금에서 부담금이 삭감되며, 고용자, 피고용자가 임금의 4.95%를 각각 부담함. 연간 최대 납입 상한금액은 2007년의 경우 고용자, 피고용자 각각 1,989.9캐나다달러임
- 피고용자는 계속 직업들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65세 이후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70세 이후에는 연금기금에 대한 부담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음
- 대규모의 기업은 대부분 사내연금기금을 제공하는데, 일정 부분은 피고용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연금기금을 반드시 수립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재정의 조달방법은 연방정부가 제시한 규칙에 따라야 함
- 동 규칙에 의하면 연금은 일종의 거치된 배상이므로 고용자는 향후 피고용자에게 연금으로 지불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일정기간의 고용 후에는 고용자가 피고용자에게 연금수령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음

## ■ 고용보험

- 1996년 7월 1일 연방정부는 근로자들이 경기의 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고용보험 법령을 제정하였고, 주 행정부의 노동력 향상을 위한 훈련의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 또한 목표달성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연방-주정부간의 협력 아래 설립될 수 있게 되었음
- 고용보험제도의 재정은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임금세에 의해서

충당되며, 최대 보험가능수익까지 고용자가 2.52%(피고용주의 1.4배), 피고용자가 1.8%를 부담함. 연간 최대 납입 상한액은 고용자가 1,008캐나다달러, 피고용자는 720캐나다달러임

- 피고용자는 전년도에 법적 최소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들이 실업상태가 될 경우 기여 수익의 55%에 해당하는 기본 혜택을 처음에 받을 수 있음. 이 혜택의 최대한도는 주당 750캐나다달러로 50주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혜택률은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감소함
- 수입이 낮은 가장의 경우에는 추가혜택을 요청할 수 있고 실업수당 청구자는 새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보조를 받을 수 있음

#### ■ 근로자 재해보상

- 캐나다의 모든 행정구역에서는 근로자 재해보상제도가 존재하여 모든 산업재해보부터의 피해보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있음
- 동 제도는 근본적으로 일종의 유, 무과실 보상제도로 노동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고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는 없음
- 고용자들이 각 지방의 근로 재해보상 위원회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각 산업별 기준과 과거 고용자 손해배상 기록에 의해 결정됨
- 캐나다의 각주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용주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험료 등은 산업, 직종 등에 따라 달라짐
- 참고로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의 경우 "Workers Compensation Act"에 의거 Worksafe BC 설립, 고용주가 의무적

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음

#### ■ 직업안전과 보건

- 캐나다의 모든 행정구역은 직업관련 사고와 직업병을 줄이기 위한 법률과 각종 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건 및 안전당국은 작업 환경이 위험한 건설 현장이나 공장 등을 조사하고 이러한 규칙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시함
- 일부 지역의 대규모 작업현장에서는 노사공동의 안전 및 보건 위원회의 구성이 의무화되어 있음

#### 4. 단체 협상 및 노조

- 캐나다의 단체협상제도는 연방 및 주정부의 노동관계법령과 노동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캐나다 근로자는 노조에 가입하고 고용자와 단체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
- 사기업의 약 20%의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했고 이 중 대규모의 노조들은 주로 대규모의 기업 내에 존재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작업 장애를 초래하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단체 협상권을 가진 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며, 노조는 경영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고용자들을 대신하여 단체 협상권을 가지고 기업의 핵심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피고용자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음
- 노동관계 위원회가 노조를 단체 협상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면 그 노조는 고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부여받음

- 노조는 모든 근로자들의 노조가입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를 대표하여 협상을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모든 근로자들을 공평하게 대변할 의무를 지님
- 노조는 노동계약이 끝나는 시점의 일정기간 동안에만 허가가 취소되거나 다른 노조로 대체될 수 있음
- 모든 행정구역에서는 단체협상기간 동안 파업과 공장폐쇄가 금지되어 있으며 노사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재 장치도 마련되어 있음. 연방정부 및 주정부들은 중재를 통한 화합을 유도하는데 이런 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만 파업이 가능함

## 5. 외국인의 고용

-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일시적인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 허가가 필요하며 이들을 고용하는 캐나다의 고용자 역시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외국인의 일시적인 취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고용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캐나다 국민이나 영주권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 VII. 기타 정보

### 1. 주재원 입국 및 체류 관련 정보

- 캐나다의 시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서 근로를 목적으로 입국,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는 취업비자(EA: Employment Authorization)를 취득해야 하며, EA는 심사에 따라 1년에서 3년간 발급되며 경우에 따라 연장도 가능함
- 일반적으로 EA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캐나다 기업으로부터 취업초청을 받은 뒤, 캐나다 인력자원부(Human Resources Canada)로부터 취업초청 확인서(Confirmation of Offer of Employment)를 받아야 하며, 그 다음 주한 캐나다 대사관 영사과에 상기 서류를 제출, EA 신청을 해야 함
- 한국기업의 캐나다 지사로 주재원으로 입국,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도 취업비자(EA)가 필요하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취업초청 확인서를 취득할 필요가 없이 직접 주한 캐나다 대사관에 취업비자(EA) 신청이 가능함. 다만, 주재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캐나다 국외 기업으로부터 캐나다 내 관련기업으로 영구가 아닌 일정기간 부임하는 조건
- 캐나다 입국 전 최소 1년간 당해 해외기업에 근무할 것
- 기업의 간부, 관리직, 전문가에 해당할 것

■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홈페이지: [www.cic.gc.ca](http://www.cic.gc.ca)

■ 캐나다 인력자원부

- 홈페이지: [www.hrsdc.gc.ca](http://www.hrsdc.gc.ca)

■ 주한 캐나다 대사관

- 주 소: 서울시 중구 무교동 45번지 코오롱 빌딩 9층 우편사서함 6299
- 전 화: 82-2-3455-6000
- 팩 스: 82-2-755-0686
- 홈페이지: [www.korea.gc.ca](http://www.korea.gc.ca)

2. 법률 서비스 기관

■ Blake, Cassels & Graydon LLP

- 소 재 지: Montreal, Ottawa, Toronto, Calgary, Vancouver
- 주 소: 199 Bay Street Suite 2800, Commerce Court  
West Toronto, ON M5L 1A9
- 전 화: (1416) 717-1500
- 팩 스: (1416) 863-2653
- 홈페이지: [www.blakes.com](http://www.blakes.com)

■ Fasken Martineau DuMoulin LLP

- 소 재 지: Vancouver, Calgary, Toronto, Quebec
- 주 소: PO Box 20 Stn Toronto Dom. Toronto, ON M5K 1N6



- 전 화: (1416) 366-8381
- 팩 스: (1416) 364-7813
- 홈페이지: [www.fasken.com](http://www.fasken.com)

■ Borden Ladner Gervais LLP

- 소 재 지: Toronto, Montreal, Calgary, Vancouver
- 주 소: 1000 Centerra Tower 400 Third Ave. S.W Calgary  
Alberta T2P 4H2
- 전 화: (1403) 232-9500
- 팩 스: (1403) 266-1395
- 홈페이지: [www.blgcanada.com](http://www.blgcanada.com)

■ Goodmans LLP

- 소 재 지: Toronto, Vancouver
- 주 소: PO Box 24 Toronto, Ontario M5B 2M6
- 전 화: (1416) 979-2211
- 팩 스: (1416) 979-1234
- 홈페이지: [www.goodmans.ca](http://www.goodmans.ca)

■ Macleod Dixon LLP

- 소 재 지: Calgary, Toronto
- 주 소: PO Box 128 Stn Toronto Dom, Toronto, Ontario  
M5K 1H1
- 전 화: (1416) 360-8511
- 팩 스: (1416) 360-8277
- 홈페이지: [www.macleoddixon.com](http://www.macleoddixon.com)

■ Aird & Berlis LLP

- 소 재 지: Toronto, Ontario
- 주 소: BCE Place Suite 1800, Box 754 181 Bay St. Toronton,  
M5J 2T9
- 전 화: (1416) 863-1500
- 팩 스: (1416) 863-1515
- 홈페이지: [www.airdberlis.com](http://www.airdberlis.com)

■ Baker & Mckenzie LLP

- 소 재 지: Toronto
- 주 소: BCE Place 181 Bay St. Suite 2100 PO Box 874 Toronto,  
ON M5J 2T3
- 전 화: (1416) 863-1221
- 팩 스: (1416) 863-6275
- 홈페이지: [www.bakernet.com](http://www.bakernet.com)

■ Gowling Lafleur Henderson LLP

- 소 재 지: Toronto, Montreal, Ottawa, Hamilton, Waterloo,  
Vancouver, Calgary
- 주 소: 160 Elgin St. Ottawa Ontario K1P 1C3
- 전 화: (1613) 233-1781
- 팩 스: (1613) 563-9868
- 홈페이지: [www.gowlings.com](http://www.gowlings.com)

■ Hughes Amys LLP

- 소 재 지: Toronto
- 주 소: 48 Yonge St. Suite 200 Toronto, ON M5E 1G6

- 전 화: (1416) 367-1608
- 팩 스: (1416) 367-8821
- 홈페이지: [www.hughesamys.com](http://www.hughesamys.com)

■ Hwang Company (한입법률사무소)

- 소 재 지: Vancouver
- 주 소: #333-4501 North Road Burnaby, BC V3N 4R7
- 전 화: (1604) 421-3669
- 팩 스: (1604) 421-6339

### 3. 회계 및 투자 자문 서비스 기관

■ BDO Dunwoody

- 소 재 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 주 소: 55 Anik St. Alexandria, Ontario, K0G 1A0
- 전 화: (1613) 525-1585
- 팩 스: (1613) 525-1436
- 홈페이지: [www.bdo.ca](http://www.bdo.ca)

■ Deloitte & Touche

- 소 재 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 주 소: 2 Queen St. E, Suite 1200 Toronto, Ontario M5C 3G7
- 전 화: (1416) 874-3875
- 팩 스: (1416) 874-3888
- 홈페이지: [www.deloitte.ca](http://www.deloitte.ca)

## ■ Grant Thornton

- 소 재 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 주 소: PO Box 55 Stn Royal Bank Toronto, Ontario M5J 2P9
- 전 화: (1416) 336-0100
- 팩 스: (1416) 360-4949
- 홈페이지: [www.grantthornton.ca](http://www.grantthornton.ca)

## ■ Mintz & Partners

- 소 재 지: Toronto
- 주 소: 1 Concorde Gate, Suite 200, North York  
Ontario M3C 4G4
- 전 화: (1416) 391-2900
- 팩 스: (1416) 391-2748
- 홈페이지: [www.mintzca.com](http://www.mintzca.com)

## ■ RSM Richter

- 소 재 지: Calgary, Montreal, Toronto
- 주 소: Watermark Tower #1410, 530-8th Ave S.W  
Calgary Alberta T2P 3S8
- 전 화: (1403) 233-8462
- 팩 스: (1403) 233-8688
- 홈페이지: [www.rsmrichter.com](http://www.rsmrichter.com)

## ■ Soberman

- 소 재 지: Toronto
- 주 소: 2 St Clair Avenue, East Suite 1100 Toronto,  
Ontario M4T 2T5
- 전 화: (1416) 964 7633

- 팩 스: (1416) 964-6454
- 홈페이지: [www.soberman.com](http://www.soberman.com)

#### ■ KPMG

- 소 재 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 주 소: 393 University Ave, Suite 1100, Toronto,  
Ontario M5G 2N9
- 전 화: (1416) 777-8000
- 팩 스: (1416) 777-3969
- 홈페이지: [www.kpmg.ca](http://www.kpmg.ca)

#### ■ PricewaterhouseCoopers

- 소 재 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 주 소: 5700 Yonge St. Suite 1900 North York  
Ontario M2M 4K2
- 전 화: (1416) 218-1500
- 팩 스: (1416) 218-1499
- 홈페이지: [www.pwc.com](http://www.pwc.com)

#### ■ Ernst & Young

- 소 재 지: Toronto, Ottawa, Vancouver 등
- 주 소: PO Box 251 Stn Toronto Dom, Toronto,  
Ontario M5K 1J7
- 전 화: (1416) 864-1234
- 팩 스: (1416) 864-1174
- 홈페이지: [www.ey.com](http://www.ey.com)

■ Lee & Lee (한인회계사)

- 소 재 지: Vancouver
- 주 소: 4501 North Rd #216A, #327A Burnaby, BC  
V3N 4R7
- 전 화: (1604) 873-1234
- 팩 스: (1604) 879-2388

## 국가 개요

- 국 명: 캐나다(Canada)
- 면 적: 9,984,670km<sup>2</sup>(한반도의 46배, 남한의 101배)
- 수 도: 오타와(Ottawa)
- 주요도시: Toronto(520만명), Montreal(361만명),  
Vancouver(217만명)
- 인 구: 3,243만명(2006년 추정)
- 민족구성: 영국계(28%), 프랑스계(23%), 기타 유럽국가(15%), 원주민  
(2%), 기타 아시안, 흑인, 아랍계(6%), 기타 혼혈(26%)
- 언 어: 공용어(영어 59% 및 불어 23%), 기타(18%)
- 종교구성: 가톨릭(44%), 기독교(29%), 이슬람교(1.9%), 그리스정교  
(1.6%), 유대교(1.1%), 기타(5.9%), 무교(16.5%)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실권자)
  -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 (취임일 1952.2.6)
  - 총 독: Michaëlle Jean (취임일 2005.9.27 (5년 임기))
  - 수 상: Stephen Harper (실권자, 취임일 2006.2.6일)
- 화폐단위: 캐나다달러 (C\$ 또는 CAD로 표기)
- 환 율: C\$ 1.05 / US\$ 1 (2007.6.1일 기준)
- 기 후: 태평양·대서양(해양성), 중부내륙(온대성 대륙성), 북극권(한대성)
- 시 차: GMT -8 (밴쿠버 기준, 한국보다 17시간 느림)  
GMT -5 (토론토 기준, 한국보다 14시간 느림)타임 실시

---

## <부록> 투자 법령 및 관련 자료

---

|                       |    |
|-----------------------|----|
| 1. 투자법 .....          | 77 |
| 2. 산업단지별 투자입지여건 ..... | 84 |



# Investment Canada Regulations

## CHAPTER 3371

### INVESTMENT CANADA ACT

#### Investment Canada Regulations (SOR/85-611)

### REGULATIONS RESPECTING INVESTMENT IN CANADA

#### *Short Title*

1. These Regulations may be cited as the *Investment Canada Regulations*.

#### *Interpretation*

2. In these Regulations, "Act" means the *Investment Canada Act*;

"American" [Repealed, SOR/95-25, s. 1]

"controlled by a NAFTA investor" means controlled by a NAFTA investor as defined in subsection 24(4) of the Act; (*sous le contrôle d'un investisseur ALÉNA*)

"controlled by an American" [Repealed, SOR/95-25, s. 1]

"controlled by a WTO investor" means controlled by a WTO investor as defined in subsection 14.1(6) of the Act; (*sous le contrôle d'un investisseur OMC*)

"financial statements" means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états financiers*)

"investor" means a non-Canadian required to give notice of an investment under section 12 of the Act or a non-Canadian required to file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n investment under subsection 17(1) of the Act; (*investisseurs*)

"NAFTA investor" means a NAFTA investor as defined in subsection 24(4) of the Act; (*investisseur ALÉNA*)

"WTO investor" means a WTO investor as defined in subsection 14.1(6) of the Act. (*investisseur OMC*) SOR/89-69, s. 1; SOR/93-604, s. 2; SOR/95-25, s. 1.

2..01 [Repealed, SOR/95-25, s. 2]

2.1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f) of the definition "NAFTA investor" in subsection 24(4) of the Act, the following forms of business organizations are, with respect to Mexico, specified:

(a) *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and

(b) *fide comiso*. SOR/93-604, s. 1; SOR/95-25, s. 2.

2.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4.1(5)(c) of the Act, "transportation services" means a Canadian business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d in the carriage of passengers or goods from one place to another by any means, including,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carriage by air, by rail, by water, by land and by pipeline. SOR/99-29, s.1

### ***Value of Assets***

3. [Repealed, SOR/95-25, s. 3]

3.1 (1)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14 and 14.1 of the Act, where only assets used in carrying on a Canadian business are acquired or where control only of an entity carrying on a Canadian business is acquired, the value of the assets shall be the aggregate of all assets acquired or of all assets of the entity, as shown in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entity carrying on the business for its fiscal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2)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14 and 14.1 of the Act, where control of an entity carrying on a Canadian business and control of one or more other entities in Canada i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the value of the assets shall be the aggregate of all assets shown in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consolidated for all the entities for their fiscal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3)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14 and 14.1 of the Act, where control of a corporation incorporated elsewhere than in Canada that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an entity in Canada carrying on a Canadian business i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the value of the assets of all ent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Canada, the control of which i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shall be the aggregate of all assets shown in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consolidated for all the entities for their fiscal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4) Wher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of entities referred to in subsection (2) or (3) are not available, the value of the assets for the purposes of sections 14 and 14.1 of the Act shall be the aggregate of the assets of all the entities as shown in the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for each such entity for its fiscal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excluding

(a) any amount shown to represent an ownership interest in any other entity the control of which i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b) any amount representing duplication arising from transactions between any entities the control of which i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5)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where an individual or entity does not ordinarily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for audit or where financial statements for its fiscal year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have not been audited, unaudited statements may be used.

(6) Where the first fiscal year of an entity has not been completed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a reference in this section to fiscal year shall mean the fiscal period that ends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lementation.

(7) The value of the assets calculat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expressed in Canadian dollars. SOR/93-604, s. 4; SOR/95-25, s. 4.

### ***Signing Authority***

4. Where a notice or application is required under section 12 or 17 of the Act, it shall be signed by the investor or by a person authorized to bind the investor for all purposes of the notice or application.

### ***Notification***

5. A notice required to be given by an investor under section 12 of the Act shall be in writing, shall contain the information prescribed in Schedule I and shall be sent to the office of the Director of Investments.

### ***Application for Review***

6. An application required to be filed by an investor under subsection 17(1) of the Act shall be in writing, shall

(a) where the application relates to an investment that is reviewable under section 14 of the Act, contain the information prescribed in Schedule II, or

(b) where the application relates to an investment that is reviewable under section 15 of the Act, contain the information prescribed in Schedule III, and shall be sent to the Director of Investments.

### ***Information Respecting a Canadian Business***

7. Where control of an entity carrying on a Canadian business and control of one or more other entities in Canada i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the information required under sections 5 and 6 relating to the Canadian business shall include information respecting all entities so acquired whose business activities comprise the Canadian business.

### ***Prescribed Business Activities***

8.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5(a) of the Act, the specific types of business activities set out in Schedule IV are hereby prescribed.

## **SCHEDULE I (Section 5)**

### ***Investor***

1. Name of the investor.

2. Mailing address of the investor.

3. Telephone number and, if any, telex and telecopier numbers.

3.01 [Repealed, SOR/95-25, s. 6]

3.1 Whether the investor is a WTO investor or a NAFTA investor.

3.2 Name and address of the controller of the investor, if any.

### ***Investment***

4. Country of origin of investment.

5. Whether investment represents an acquisition of control of a Canadian business 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Canadian business.

6. Date of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 ***Canadian Business***

7. Name of the Canadian business.

8. Business address of the Canadian business.

9. Brief description of the business activities that comprise or will comprise the Canadian business.

### ***Acquisition of Control of a Canadian Business***

10. In the case of an acquisition of control of a Canadian business, provide the number of persons employed in connection with the Canadian business.

10.01 and 10.02 [Repealed, SOR/95-25, s. 7]

10.1 Where the investor is not a WTO investor or a NAFTA investor, whether the Canadian business is, immediately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controlled by a WTO investor or controlled by a NAFTA investor.

10.2 Where the investor is a WTO investor or a NAFTA investor or where the Canadian business is, immediately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controlled by a WTO investor or controlled by a NAFTA investor, whether the Canadian business

(a) engages in the production of uranium and owns an interest in a producing uranium property in Canada;

(b) provides any financial service as defined in subsection 14.1(6) of the Act;

(c) provides any transportation service referred to in subsection 14.1(5) of the Act; or

(d) is a cultural business as defined in subsection 14.1(6) of the Act.

10.3 Where the Canadian business is, immediately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controlled outside of Canada, indicate the country of the controller.

11. [Repealed, SOR/95-25, s. 8]

11.1 (1) Where only assets used in carrying on a Canadian business are acquired or where control only of an entity carrying on a Canadian business is acquired, state the value of the aggregate of all assets acquired or of all assets of the entity carrying on the business, calculated in the manner set out in section 3.1 of these Regulations.

(2) Where control of an entity carrying on a Canadian business and control of one or more other entities i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state, the value as calculated in the manner set out in section 3.1 of these Regulations

(a) of the aggregate of all assets of the entity carrying on the Canadian business and of all other entities in Canada the control of which is acquired; and

(b) if control of a corporation incorporated elsewhere than in Canada i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of the aggregate of all assets of all entities both inside Canada and outside Canada, the control of which is acquired in the same transaction, calculated in the manner set out in section 3.1 of these Regulations.

### ***Establishment of a New Canadian Business***

12. In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of a new Canadian business, provide

(a) the projected number of persons to be employed in connection with the new Canadian business at the end of the second full year of operation;

(b) the projected total amount to be invested in the new Canadian business during the first full two years of operation; and

(c) the projected level of annual sales or revenues of the new Canadian business during the second full year of operation.

### ***Cultural Heritage or National Identity***

13. If the investment falls within any specific type of business activity set out in Schedule IV,

(a) state which;

(b) provide a description of the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investor;

(c) provide a description of any business activity carried on by the controller, if any, of the investor that is similar to those stated pursuant to paragraph (a);

(d) provide a description of any products manufactured or sold or to be manufactured or sold, and of any services rendered or to be rendered, by the Canadian business; and

(e) provide, in the case of an acquisition of control of a Canadian business, the name of the vendor and the name of the controller, if any, of the vendor.

SOR/89-69, ss. 3 to 5; SOR/93-604, ss. 5 to 8; SOR/95-25, ss. 5 to 8.

## **SCHEDULE II (s. 6)**

### ***Investor***

1. Name of the investor.

1.01 [Repealed, SOR/95-25, s. 9]

1.1 Whether the investor is a WTO investor or a NAFTA investor.

2. Business or mailing address of the investor.

3. Telephone number and, if any, telex and telecopier numbers.

4. Name and address of controller of the investor, if any, and the manner in which control is exercised.

5. Annual reports or, if not availabl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nvestor for the three fiscal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6. Description of the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n by the investor and by its controller, if any.

### ***Investment***

7. Name of the vendor and name of the controller, if any, of the vendor.

8. Copy of purchase and sale agreement or, if not available, an outline of the principal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the estimated total purchase price for the Canadian business and, where applicable, the estimated purchase price for all entities acquired.

9. Date of implementation of investment.

### ***Canadian Business***

10. Name of the Canadian business.

11. Business or mailing address of the Canadian business.

12. Annual reports or, if not available,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Canadian business for the three fiscal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13. Description of the business activities that comprise the Canadian business, including

- (a) the locations in Canada where the business is being carried on;
- (b) the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n at each location; and
- (c) the number of employees at each location.

13.01 [Repealed, SOR/95-25, s. 10]

13.1 Where the investor is not a WTO investor or a NAFTA investor, whether the Canadian business is, immediately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controlled by a WTO investor or controlled by a NAFTA investor.

#### **Assets**

14. [Repealed, SOR/95-25, s. 11]

14.1 (1) Where only assets used in carrying on a Canadian business are acquired or where control only of an entity carrying on a Canadian business is acquired, state the value of the aggregate of all assets acquired or of all assets of the entity carrying on the business, calculated in the manner set out in section 3.1 of these Regulations.

(2) Where control of an entity carrying on a Canadian business and control of one or more other entities i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state, the value as calculated in the manner set out in section 3.1 of these Regulations,

- (a) the value of the aggregated assets of the entity carrying on the Canadian business and of all other entities in Canada the control of which is being acquired; and
- (b) if control of a corporation incorporated elsewhere than in Canada is acquired, directly or indirectly, the value of the aggregated assets of all ent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Canada, the control which is acquired in the same transaction.

#### **Plans**

15.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stor's plans for the Canadian business with specific reference to

- (a) the relevant factors set out in section 20 of the Act; and
- (b) the current operations of the Canadian business.

SOR/89-69, ss. 6, 7; SOR/93-604, ss. 9 to 11; SOR/95-25, ss. 9 to 11.

### **SCHEDULE III (s. 6)**

#### **Investor**

1. Name of the investor.
2. Annual reports or, if not available, financial statements of the investor for the three fiscal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 **Canadian Business**

3. Expanded description of the business activities that comprise or will comprise the Canadian business, including
  - (a) the locations in Canada where the business is being carried on or is to be carried on;

(b) the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n or to be carried on at each location; and

(c) the number of employees at or to be at each location.

4. In the case of an acquisition of control of a Canadian business,

(a) annual reports or, if not available,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Canadian business for the three fiscal years immediately prece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investment; and

(b) copy of purchase and sale agreement or, if not available, an outline of the principal terms and conditions including the estimated total purchase price for the Canadian business and, where applicable, the estimated purchase price for all entities acquired.

### ***Plans***

5.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stor's plans for the Canadian business with specific reference to

(a) the relevant factors set out in section 20 of the Act; and

(b) the compatibility of the investment with Canada's cultural heritage or national identity.

### **SCHEDULE IV (s. 8 and Sch. I)**

1. Publication, distribution or sale of books, magazines, periodicals or newspapers in print or machine readable form.
2. Production, distribution, sale or exhibition of film or video products.
3. Production, distribution, sale or exhibition of audio or video music recordings.
4. Publication, distribution or sale of music in print or machine readable form.

## 다. 투자입지 여건

### 1. 캐나다의 산업단지 개요

캐나다의 산업단지는 특정 산업 별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별로 지방정부인 시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 공단지역(Industrial Zone)과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공단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민간공단이다.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연방정부는 개입하지 않으며 공단지역이 소재해 있는 시 정부의 경제개발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시 공단지역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으며 외국기업이 입주하기 가능 하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공단 찾아볼 수 없다.

외국기업이 특정도시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등의 특혜는 없다. 그렇지만 연방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제도, 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제도 등 각종 기업활동 지원제도에 대해 국내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므로 이러한 제도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정부의 대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신청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된다.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ACOA(대서양), FORDQ(퀘벡주), FEDNOR(온타리오주북부), WEDC(서부) 등의 4 개 산하기관을 두고 동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주 정부차원의 대표적인 산업지원제도로는 온타리오주 해외시장개척기금(TEF), 기업혁신 및 생산성제고 지원제도(OIPS), 퀘벡주의 수출진흥프로그램(APEX)과 산업개발지원제도(CQIDP) 등이 있다.

### 2. 자유무역지대

현재 캐나다 내에는 경제관련 특수지역이나 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로 일컬어지는 경제관련 특수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사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단지역이나 민간기업들의 공단지역이 각지에 형성되어 있다.

다만, 캐나다 정부는 원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원주민들의 국경 통과 시 개인사용 목적의 물품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 3. 주요 산업단지

- ① Annacis Island Business Park
- ② Crestwood Industrial/Business Park
- ③ Tilbury Business Park and Delta Industrial centre
- ④ Great Plains Industrial Park
- ⑤ Westwind Industrial Park
- ⑥ Cambridge Business Park
- ⑦ London Industrial Park (Trafalgar & Oxford)
- ⑧ Welland Industrial Park (Southwell, Ontario Industrial & North Welland)
- ⑨ Gateway Industrial Park, Sault Ste Marie
- ⑩ Vaughan

| Annacis Island Business Park |                                                                                                                                                                                          |                                                    |                                                                       |
|------------------------------|------------------------------------------------------------------------------------------------------------------------------------------------------------------------------------------|----------------------------------------------------|-----------------------------------------------------------------------|
| 소 재 지                        | Hwy 91 & Richmond Connector, Delta, B.C.                                                                                                                                                 |                                                    |                                                                       |
| 부지면적                         | 1,046,710m2                                                                                                                                                                              | 조성주체                                               | Gorsvenor International Canada Ltd./Royal Le Page / Town Group (개인기업) |
| 공단성격                         | 서울 여의도와 유사한 섬에 위치하고 있어 항만, 도로, 철도, 공항에 근접하며 미국 국경과도 자동차로 30 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요충지로서 주로 유통산업 업체로 구성                                                                                            |                                                    |                                                                       |
| 입주비용                         | - 구입시: C\$33 - 58 만/acre<br>- 임차시: C\$5.25 - 7.75/sq.ft                                                                                                                                  |                                                    |                                                                       |
| 조성현황,<br>입주가능시기              |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                                                    |                                                                       |
| 교통                           | 항만                                                                                                                                                                                       | Delta Seaport 에서 20km                              |                                                                       |
|                              | 철도                                                                                                                                                                                       | CN rail 에서 10km 이내                                 |                                                                       |
|                              | 공항                                                                                                                                                                                       | Richmond -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20km |                                                                       |
|                              | 도로                                                                                                                                                                                       | Hwy 91 에서 5km, Hwy 401 인접                          |                                                                       |
| 전 력                          | BC 전력공사에서 관할<br>(based on consumption of 400,000 kWh per month on 1,000 KW demand)<br>- 산업용 전력 사용료: \$4.42/month<br>- demand charge: consumption >35 kW: NIL<br>next 115 kW: \$3.54 / kW |                                                    |                                                                       |

|                 |                                                                                                                                                                                               |     |                                                  |     |               |
|-----------------|-----------------------------------------------------------------------------------------------------------------------------------------------------------------------------------------------|-----|--------------------------------------------------|-----|---------------|
|                 | all additional kW: \$6.79 / kW<br>- Energy Charge: > 14,800 kWh \$0.0691 / kWh<br>All additional kWh \$0.0332 / kWh<br>- Minimum charge: \$13.02 per month<br>Terasen GAS 관할<br>- C\$3.718/GJ |     |                                                  |     |               |
| 용 수             | C\$0.3222/m3 (상수료는 없고 하수로 개념으로 부과. 분기당 최소 C\$30.56 부과 리치먼드 시에서 관할)                                                                                                                            |     |                                                  |     |               |
| 통신              | - Telus: 1 commercial line<br>- 설치: C\$112 + Tax (14%)<br>- 기본사용료/월: C\$52.80 + Tax (14%)<br>- 시외, 국제전화 요금은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                                                                     |     |                                                  |     |               |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 종합대학이 3 개 소재하여 인력조달 사정은 양호한 편임<br>- 임금은 사무직 C\$1,800-3,000/월, 생산직이 C\$2,000 전후로 캐나다 여타지역과 비슷함                                                                                               |     |                                                  |     |               |
| 외국기업 입주현황       | 총 입주업체 150 여 사 중 약 40%                                                                                                                                                                        |     |                                                  |     |               |
| 한국입주 기업명단       | 없음                                                                                                                                                                                            |     |                                                  |     |               |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없음                                                                                                                                                                                            |     |                                                  |     |               |
| 우대조치            | 없음 (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     |                                                  |     |               |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 교통이 편리하고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어 창고 및 물류센터로 활용 유망<br>- 제조업은 경공업위주 입주 유망                                                                                                                                |     |                                                  |     |               |
| 공단연락처           |                                                                                                                                                                                               | 업체명 | Royal Le Page                                    |     |               |
|                 |                                                                                                                                                                                               | 주 소 | # 400-885 Dunsmuir St., Vancouver, B.C., V6C 1N8 |     |               |
| 전화              | 1-604-683-3111                                                                                                                                                                                | 팩스  | 1-604-683-0432                                   | 담당자 | Mr. Ken Blunt |

| Crestwood Industrial / Business Park |                                                                         |
|--------------------------------------|-------------------------------------------------------------------------|
| 소 재 지                                | Fraser Road - Westminster Hwy - Jacombs Rd - NO. 6 Road, Richmond, B.C. |

|                 |                                                                                                                                                                  |                                                       |                           |
|-----------------|------------------------------------------------------------------------------------------------------------------------------------------------------------------|-------------------------------------------------------|---------------------------|
| 부지면적            | 2,428,026m2                                                                                                                                                      | 조성주체                                                  | Bentall Properties (개인기업) |
| 공단성격            | 서부캐나다의 부동산 및 관리로 유명한 벤틀사에서 기획한 주요 산업단지로서 밴쿠버 국제 공항이 위치한 리치몬드시에 위치. 미 국경과 연결되는 Hwy 91 에 근접한 요충지이며 주로 컴퓨터 산업과 관련된 유통업체가 입주되어있음                                     |                                                       |                           |
| 입주비용            | - 구입시: C\$65 만 - 110 만/acre<br>- 임차시: C\$5.50 - 8.75/sq.ft                                                                                                       |                                                       |                           |
| 조성현황,<br>입주가능시기 | 조성 완료. 현재도 입주 가능                                                                                                                                                 |                                                       |                           |
| 교통              | 항만                                                                                                                                                               | Delta Seaport 에서 15km                                 |                           |
|                 | 철도                                                                                                                                                               | CN Rail 에서 20km                                       |                           |
|                 | 공항                                                                                                                                                               | Richmond -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10km 이내 |                           |
|                 | 도로                                                                                                                                                               | Hwy 91 에서 10km 이내                                     |                           |
| 전 력             | BC 전력공사에서 관할<br>(based on consumption of 400,000 kWh per month on 1,000 KW demand)<br>- 산업용 전력 사용료: \$4.42/month<br>- demand charge: consumption >35 kW: NIL<br> |                                                       |                           |

|                       |                                                                                    |                                               |                    |     |                |
|-----------------------|------------------------------------------------------------------------------------|-----------------------------------------------|--------------------|-----|----------------|
| 외국기업<br>입주현황          | 총 입주업체 약 100 여 개사 중 35%                                                            |                                               |                    |     |                |
| 한국입주<br>기업명단          | 없음                                                                                 |                                               |                    |     |                |
| 입주자격 및<br>규제현황        | 없음                                                                                 |                                               |                    |     |                |
| 우대조치                  | 없음 (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                                               |                    |     |                |
| 입주여건에<br>대한 무역관<br>의견 | 주요 고속도로 및 교통이 편리하며 소비시장에 인접하여 주로 유통업관계,<br>특히 전자제품의 유통업체가 주위에 많아 전자 유통업체의 물류센터로 이용 |                                               |                    |     |                |
| 공단연락처                 | 업체명                                                                                | Bentall Properties                            |                    |     |                |
|                       | 주 소                                                                                | 3100-595 Burrard St, Vancouver, B.C., V7X 1B1 |                    |     |                |
| 전화                    | 1-604-661-<br>5000                                                                 | 팩스                                            | 1-604-661-<br>5055 | 담당자 | Mr. Bruce Tama |

| Tilbury Business Park and Delta Industrial Centre |                                                                                                                                                                  |                                                       |                                                       |
|---------------------------------------------------|------------------------------------------------------------------------------------------------------------------------------------------------------------------|-------------------------------------------------------|-------------------------------------------------------|
| 소 재 지                                             | River Rd, Delta, B.C.                                                                                                                                            |                                                       |                                                       |
| 부지면적                                              | 1,432,535m2                                                                                                                                                      | 조성주체                                                  | BDDC & Intrawest Dev. Corp. / Royal Le Page<br>(개인기업) |
| 공단성격                                              | 개인기업이 분양. 미국 및 B.C.주의 소비시장에 인접한 유리한 지리적인<br>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                                                       |
| 입주비용                                              | - 구입시: C\$33 - 58 만/acre<br>- 임차시: C\$5.25 - 7.75/sq.ft                                                                                                          |                                                       |                                                       |
| 조성현황,<br>입주가능시기                                   | 조성 완료. 현재도 입주 가능                                                                                                                                                 |                                                       |                                                       |
| 교통                                                | 항만                                                                                                                                                               | Delta Seaport 인접                                      |                                                       |
|                                                   | 철도                                                                                                                                                               | CN Rail 에서 약 20km                                     |                                                       |
|                                                   | 공항                                                                                                                                                               | Richmond - Vancouver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20km 이내 |                                                       |
|                                                   | 도로                                                                                                                                                               | Alex Fraser Bridge 근접, Hwy 91 에서 5km 이내               |                                                       |
| 전 력                                               | BC 전력공사에서 관할<br><br>(based on consumption of 400,000 kWh per month on 1,000 KW demand)<br>- 산업용 전력 사용료: \$4.42/month<br>- demand charge: consumption >35 kW: NIL |                                                       |                                                       |

|                 |                                                                                                                                                                                                                                                         |    |                         |     |               |
|-----------------|---------------------------------------------------------------------------------------------------------------------------------------------------------------------------------------------------------------------------------------------------------|----|-------------------------|-----|---------------|
|                 | <p>next 115 kW: \$3.54 / kW</p> <p>all additional kW: \$6.79 / kW</p> <p>- Energy Charge: &gt; 14,800 kWh \$0.0691 / kWh</p> <p>All additional kWh \$0.0332 / kWh</p> <p>- Minimum charge: \$13.02 per month</p> <p>Terasen 관할</p> <p>- C\$3.718/GJ</p> |    |                         |     |               |
| 용 수             | <p>- 상수료는 C\$0.45/m3 (분기당 최소 C\$ 44.50 부과)</p> <p>- 하수료는 상수 사용량에 대해 C\$0.35/m3 (분기당 최소 C\$55 부과. 델타시에서 관할)</p>                                                                                                                                          |    |                         |     |               |
| 통신              | <p>- Telus 사 관할 (1 Commercial Line)</p> <p>- 설치비: C\$ 112 + Tax (14%)</p> <p>- 기본사용료/월: C\$ 52.80 + Tax (14%)</p> <p>- 시외, 국제전화 요금은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p>                                                                                                   |    |                         |     |               |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p>- 현재 B.C.주의 실업률(약 9%)이 높고 종합대학이 3 개 소재하여 인력조달 사정은 양호한 편임</p> <p>- 임금은 사무직 C\$1,800-3,000/월, 생산직이 C\$2,000 전후로 캐나다 여타지역과 비슷함</p>                                                                                                                      |    |                         |     |               |
| 외국기업 입주현황       | 총 입주업체 200 여 사 중 약 45%                                                                                                                                                                                                                                  |    |                         |     |               |
| 한국입주 기업명단       | 없음                                                                                                                                                                                                                                                      |    |                         |     |               |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없음                                                                                                                                                                                                                                                      |    |                         |     |               |
| 우대조치            | 없음 (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    |                         |     |               |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p>- 미국 워싱턴주와 B.C.주를 연결하는 Hwy 91 에서 5km 이내에 있으며 편리한 교통조건으로 인해 유통창고로 활용 유망</p> <p>- 제조업은 경공업위주 입주 유망</p>                                                                                                                                                 |    |                         |     |               |
| 공단연락처           | 업체명                                                                                                                                                                                                                                                     |    | Royal Le Page           |     |               |
|                 | 주 소                                                                                                                                                                                                                                                     |    | #206-14888-104th Avenue |     |               |
| 전화              | 1-604-589-3111                                                                                                                                                                                                                                          | 팩스 | 1-604-589-7548          | 담당자 | Mr. Ken Blunt |

| Great Plains Industrial Park |                                                                                                                                                                                                                                                                                                                                                                |                                       |      |
|------------------------------|----------------------------------------------------------------------------------------------------------------------------------------------------------------------------------------------------------------------------------------------------------------------------------------------------------------------------------------------------------------|---------------------------------------|------|
| 소 재 지                        | 52nd St & Glenmore Trail S.E., Calgary, Alberta                                                                                                                                                                                                                                                                                                                |                                       |      |
| 부지면적                         | -                                                                                                                                                                                                                                                                                                                                                              | 조성주체                                  | 캘거리시 |
| 공단성격                         | 캘거리 남부 시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동 공업단지는 주로 경공업 및 통신 등 첨단산업이 유통업위주로 개발된 시 관리공단으로서 1995 년에 개발                                                                                                                                                                                                                                                                              |                                       |      |
| 입주비용                         | C\$15 만/acre                                                                                                                                                                                                                                                                                                                                                   |                                       |      |
| 조성현황,<br>입주가능시기              |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                                       |      |
| 교통                           | 항만                                                                                                                                                                                                                                                                                                                                                             | 없음 (약 1,000km 떨어진 밴쿠버항 이용)            |      |
|                              | 철도                                                                                                                                                                                                                                                                                                                                                             | CN Rail 에서 7km                        |      |
|                              | 공항                                                                                                                                                                                                                                                                                                                                                             | Calgary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20km |      |
|                              | 도로                                                                                                                                                                                                                                                                                                                                                             | Hwy 2 에서 5km                          |      |
| 전 력                          | <p>-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 전력사용량에 따라 가격상이</p> <p>1) 5,000KWH/월 이하 사용시<br/>기본요금: C\$12.45/월<br/>사용료: C\$0.08972/kWH</p> <p>2) 5,000KWH/월 초과 사용시<br/>기본요금: C\$5.50/월<br/>사용료: 최초 2500 KW - C\$263.00,<br/>초과분: C\$0.08079/kWH overall average pending on the market consumption</p> <p>- Natural Gas Direct Energy Regulated Services 에서 관할</p> <p>1) 사용료: \$6.697/GJ</p> |                                       |      |
| 용 수                          | <p>-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p> <p>1) 상수료(according to water meter size from 15mm - 250mm)<br/>기본요금: C\$10.74 - 235.85 + 사용료<br/>사용료: 100m3 이하- C\$1.1224/m3<br/>101-900 m3: C\$0.9452/m3<br/>1,000m3 이상: C\$0.8754/m3</p> <p>2) 하수료 : 상수료의 2/3% 부과</p> <p>** 2008 년 상수료 35%까지 증가 예측**</p>                                                                                |                                       |      |
| 통신                           | <p>- Telus Corp. 에서 관할</p> <p>- 1 개의 상업용 선 설치비: C\$75 + (Tax, 6% GST)</p>                                                                                                                                                                                                                                                                                      |                                       |      |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사용료: C\$37.00 - 40.66 + (Tax, 6% GST)</li> <li>- Emergency 911 Fee: C\$0.13 -0.44 + (Tax, 6% GST)</li> <li>- 시외, 국제전화 요금은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li> </ul>                      |    |                                                           |     |                  |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화학 및 첨단산업관련 양질의 인력 보유했으나, 최근의 인력난이 심화됨</li> <li>- 사무직은 월 C\$1,500-3,000, 생산직은 월 C\$ 2,000 전후이며 연구직의 임금은 분야에 따라 상당한 고수준임</li> </ul>                                      |    |                                                           |     |                  |
| 외국기업 입주현황       | -                                                                                                                                                                                                                  |    |                                                           |     |                  |
| 한국입주 기업명단       | -                                                                                                                                                                                                                  |    |                                                           |     |                  |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없음                                                                                                                                                                                                                 |    |                                                           |     |                  |
| 우대조치            | 없음 (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    |                                                           |     |                  |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캘거리는 중부 산업중심도시로서 2002 엑스포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최근 대기업들이 다수 본사를 동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어 캐나다 내 가장 성장이 유망한 지역</li> <li>- 특히, 동 지역에는 통신 등 첨단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동 업종 및 유통업체 입주 유망</li> </ul> |    |                                                           |     |                  |
| 공단연락처           | 업체명                                                                                                                                                                                                                |    | The City of Calgary. Corporate Properties Group #8052     |     |                  |
|                 | 주 소                                                                                                                                                                                                                |    | P.O.BOX 2100, Postal Station M, Calgary, Alberta, T2P 2M5 |     |                  |
| 전화              | 1-403-268-2276                                                                                                                                                                                                     | 팩스 | 1-403-268-1948                                            | 담당자 | Mr. Scott Hooper |

| Westwind Industrial Park |                                                                                                                             |      |       |
|--------------------------|-----------------------------------------------------------------------------------------------------------------------------|------|-------|
| 소 재 지                    | 47 <sup>TH</sup> Street N.E. & McKnight Blvd., N.E., Calgary, Alberta                                                       |      |       |
| 부지면적                     | 158,201sq.ft                                                                                                                | 조성주체 | 캘거리 시 |
| 공단성격                     | <p>캘거리 시 관할지역으로 시청 도시개발부에서 직접 분양. 경공업개발계획 단지로서 유통업을 첨가할 계획에 있음</p> <p>- 9 월 2007 까지 McKnight-Westwinds LRT station 건설예정</p> |      |       |
| 입주비용                     | C\$17.5 만/acre                                                                                                              |      |       |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      |       |

|                |                                                                                                                                                                                                                                                                                                                                                                                                                   |                                        |
|----------------|-------------------------------------------------------------------------------------------------------------------------------------------------------------------------------------------------------------------------------------------------------------------------------------------------------------------------------------------------------------------------------------------------------------------|----------------------------------------|
| 교통             | 항만                                                                                                                                                                                                                                                                                                                                                                                                                | 없음 (약 1,000km 떨어진 밴쿠버항 이용)             |
|                | 철도                                                                                                                                                                                                                                                                                                                                                                                                                | CN Rail 에서 5km                         |
|                | 공항                                                                                                                                                                                                                                                                                                                                                                                                                | Calgary International Airport 에서 4.5km |
|                | 도로                                                                                                                                                                                                                                                                                                                                                                                                                | Hwy 91 에 근접, Hwy 2 에서 7km              |
| 전 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 전력사용량에 따라 가격상이</li> <li>1) 5,000KWH/월 이하 사용시<br/>기본요금: C\$12.45/월<br/>사용료: C\$0.08972/kWH</li> <li>2) 5,000KWH/월 초과 사용시<br/>기본요금: C\$5.50/월<br/>사용료: 최초 2500 KW - C\$263.00,<br/>초과분: C\$0.08079/kWH overall average pending on the market consumption</li> <li>- Natural Gas Direct Energy Regulated Services 에서 관할</li> <li>1) 사용료: \$6.697/GJ</li> </ul> |                                        |
| 용 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캘거리 시청에서 관할</li> <li>1) 상수료(according to water meter size from 15mm - 250mm)<br/>기본요금: C\$10.74 - 235.85 + 사용료<br/>사용료: 100m3 이하- C\$1.1224/m3<br/>101-900 m3: C\$0.9452/m3<br/>1,000m3 이상: C\$0.8754/m3</li> <li>2) 하수료 : 상수료의 2/3% 부과</li> <li>** 2008 년 상수료 35%까지 증가 예측**</li> </ul>                                                                                  |                                        |
| 통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us Corp. 에서 관할</li> <li>- 1 개의 상업용 선 설치비: C\$75 + (Tax, 6% GST)</li> <li>- 월 사용료: C\$37.00 - 40.66 + (Tax, 6% GST)</li> <li>- Emergency 911 Fee: C\$0.13 - 0.44 + (Tax, 6% GST)</li> <li>- 시외, 국제전화 요금은 거리, 지역에 따라 차등</li> </ul>                                                                                                                                      |                                        |
| 인력조달 및<br>임금수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화학 및 첨단산업관련 양질의 인력 보유 및 조달 용이</li> <li>- 사무직은 월 C\$1,500-3,000, 생산직은 월 C\$2,000 전후이고 연구직의 임금은 분야에 따라 상당한 고수준임</li> </ul>                                                                                                                                                                                                                                               |                                        |
| 외국기업<br>입주현황   | -                                                                                                                                                                                                                                                                                                                                                                                                                 |                                        |



|                       |                                                                                                                                           |                                                              |                    |     |                     |
|-----------------------|-------------------------------------------------------------------------------------------------------------------------------------------|--------------------------------------------------------------|--------------------|-----|---------------------|
| 한국입주<br>기업명단          | -                                                                                                                                         |                                                              |                    |     |                     |
| 입주자격 및<br>규제현황        | 없음                                                                                                                                        |                                                              |                    |     |                     |
| 우대조치                  | 없음 (다만,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 및 마케팅지원 수혜 가능)                                                                                                       |                                                              |                    |     |                     |
| 입주여건에<br>대한 무역관<br>의견 | - 캘거리는 중부 산업중심도시로서 최근 대기업들이 다수 본사를 동 지역으로<br>이전하고 있어 캐나다 내 가장 성장이 유망한 지역임<br>- 특히, 동 지역에는 통신 등 첨단산업과 석유화학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동<br>업종 및 유통업체 입주 유망 |                                                              |                    |     |                     |
| 공단연락처                 | 업체명                                                                                                                                       | The City of Calgary, Business Dev. Mgr, Economic Development |                    |     |                     |
|                       | 주 소                                                                                                                                       | P.O. Box 2100, Stn. M. Calgary AB T2P 2M5                    |                    |     |                     |
| 전화                    | 1-403-221-<br>7899                                                                                                                        | Toll<br>Free                                                 | 1-888-222-<br>5855 | 담당자 | Mr. Richard Pootman |

| Cambridge Business Park |                                                                                                                                                                                                                    |                                                            |                    |
|-------------------------|--------------------------------------------------------------------------------------------------------------------------------------------------------------------------------------------------------------------|------------------------------------------------------------|--------------------|
| 소 재 지                   | Cambridge, Ontario (온타리오주 남부지역)                                                                                                                                                                                    |                                                            |                    |
| 부지면적                    | 345 hectares                                                                                                                                                                                                       | 조성주체                                                       | Cambridge 시 (지방정부) |
| 공단성격                    |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자동차부품, 자동차조립, 기계, 금속가공, 항공부품업이 발달                                                                                                                                                                     |                                                            |                    |
| 입주비용                    | 공단지: C\$210,000/acre                                                                                                                                                                                               |                                                            |                    |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                                                            |                    |
| 교통                      | 항만                                                                                                                                                                                                                 | 에리, 휴론, 온타리오 호수로부터 1 시간 거리                                 |                    |
|                         | 철도                                                                                                                                                                                                                 | 토론토, 몬트리얼 등 대도시와 철도로 연결                                    |                    |
|                         | 공항                                                                                                                                                                                                                 | Regional of Waterloo Airport 와 인접,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차량으로 1 시간 거리 |                    |
|                         | 도로                                                                                                                                                                                                                 | Hwy 401, 국도 24, 8 번 도로 등 통과                                |                    |
| 전 력                     | Cambridge 시 와 North Dumfries Hydro 공동 관할<br>(전력 공급 풍부, 현재 2 MVA 용량, 27,6 kV 공급)<br>- 월 1000 - 5,000 kW 사용시<br>Access Charge: \$787.32/month<br>Distribution kW Charge: \$2.9007 / kW<br>Admin. Fee: \$0.25 / month |                                                            |                    |

|     |                                                                                                                                                                                                                                                                                                                                                                                                                                                                                                                                                                                                                                                                                                                                                                                                                                                                                                                                                                                                                                                                                                          |
|-----|----------------------------------------------------------------------------------------------------------------------------------------------------------------------------------------------------------------------------------------------------------------------------------------------------------------------------------------------------------------------------------------------------------------------------------------------------------------------------------------------------------------------------------------------------------------------------------------------------------------------------------------------------------------------------------------------------------------------------------------------------------------------------------------------------------------------------------------------------------------------------------------------------------------------------------------------------------------------------------------------------------------------------------------------------------------------------------------------------------|
|     | <p>Wholesale Market Services: \$0.0062 / kWh</p> <p>Debt Retirement Charge: \$0.007 / kWh</p> <p>Transmission Service: \$2.0900 / kW</p> <p>Transformation Services: \$1.7360 / kW</p> <p>Transformer Allowance: \$0.60 / kW</p> <p>- 월 &gt;5,000 KW 사용시</p> <p>Access Charge: \$4,382.05/month</p> <p>Distribution kW Charge: \$1.6433 / kW</p> <p>Admin. Fee: \$0.25 / month</p> <p>Wholesale Market Services: \$0.0062 / kWh</p> <p>Debt Retirement Charge: \$0.007 / kWh</p> <p>Transmission Service: \$1.9804 / kW</p> <p>Transformation Services: \$1.7671 / kW</p> <p>Transformer Allowance: \$0.60 / kW</p> <p>Natural Gas – Union Gas Ltd. (Westcoast Energy Inc.)관할</p> <p>- 연간 평균 140,000 – 40,000,000 m3 사용</p> <p>Gas-Commodity rate: \$0.361119 / m3</p> <p>Transportation to Union Gas: \$0.033566 / m3</p> <p>Storage: \$0.009309 / m3</p> <p>First 1,400 m3: \$0.051701 / m3</p> <p>Next 4,600 m3: \$0.041427 / m3</p> <p>Next 124,000 m3: \$0.030859 / m3</p> <p>Next 270,000 m3: \$0.024743 / m3</p> <p>All over 400,000 m3: \$0.022978 / m3</p> <p>Monthly Fixed Charge: \$16.00</p> |
| 용 수 | <p>- 공단 내 약 5 백만 갤런의 저수지 및 1 백 5 십만 갤런 물탱크 보유.</p> <p>- 수도료: total water consumed @ \$0.8540/m3, plus monthly service charge</p> <p>- 하수료: total water consumed @ \$0.6525/m3, plus monthly service charge</p> <p>수도 Monthly service charge (water meter size: 25mm – 300mm)</p> <p>- \$4.95 – \$129.04/month</p> <p>하수 Monthly service charge (water meter size: 25mm – 300m)</p> <p>- \$2.91 – \$95.30/month</p>                                                                                                                                                                                                                                                                                                                                                                                                                                                                                                                                                                                                                                                                                       |

|                 |                |                                                                                                                                                                                                                                                                                                                                                     |                                                                             |     |                        |
|-----------------|----------------|-----------------------------------------------------------------------------------------------------------------------------------------------------------------------------------------------------------------------------------------------------------------------------------------------------------------------------------------------------|-----------------------------------------------------------------------------|-----|------------------------|
| 통신              |                | Bell Canada 서비스 지역 (14% Ta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상업용 라인 설치비용: \$55.00</li> <li>- 월 사용료: \$18.48</li> <li>- emergency 911 fee: \$0.19</li> <li>- touchtone service: \$2.80</li> </ul> 광섬유 등 첨단 통신 네트워크 Atria Networks Inc. 와 Bell Canada 에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N speed 10Mbps – 100Mbps</li> </ul> |                                                                             |     |                        |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기술인력 45 만 명 보유, 고급인력 풍부</li> <li>- 시간당 평균 임금: 일반기계공 C\$13.80, 용접 C\$14.90, 빌딩관리인 C\$10.20, 금속공 C\$20.10</li> </ul>                                                                                                                                                                                      |                                                                             |     |                        |
| 외국기업 입주현황       |                | Toyota, Ciba Geigy, Allen Bradley 등 대표적 다국적 기업                                                                                                                                                                                                                                                                                                      |                                                                             |     |                        |
| 한국입주 기업명단       |                | 없음                                                                                                                                                                                                                                                                                                                                                  |                                                                             |     |                        |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 없음                                                                                                                                                                                                                                                                                                                                                  |                                                                             |     |                        |
| 우대조치            |                | 온타리오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업 금융, 수출 및 기술개발제도 활용 가능                                                                                                                                                                                                                                                                                                     |                                                                             |     |                        |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 고급인력을 요하는 자동차, 금속가공업 관련 첨단 산업 진출 요망                                                                                                                                                                                                                                                                                                                 |                                                                             |     |                        |
| 공단연락처           |                | 업체명                                                                                                                                                                                                                                                                                                                                                 | Business Development Department<br>The Corporation of the City of Cambridge |     |                        |
|                 |                | 주 소                                                                                                                                                                                                                                                                                                                                                 | 73 Water Street North, P.O. Box 669, Cambridge, ON N1R 5W8                  |     |                        |
| 전화              | 1-519-740-4535 | 팩스                                                                                                                                                                                                                                                                                                                                                  | 1-519-740-4512                                                              | 담당자 | Mr. Donald G. Eastwood |

| London Industrial Park (Trafalgar & Oxford) |                                                      |      |            |
|---------------------------------------------|------------------------------------------------------|------|------------|
| 소 재 지                                       | London, Ontario (온타리오주 남서부지역)                        |      |            |
| 부지면적                                        | 2 백 8 십만 km2                                         | 조성주체 | 런던시 (지방정부) |
| 공단성격                                        |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자동차조립/부품, 플라스틱, 기계, 식품가공, 인쇄, 의료기술 등 발달 |      |            |
| 입주비용                                        | 공단지: \$65,000 – 85,000/acre                          |      |            |



|                 |                                                                                                                            |                                                                 |             |
|-----------------|----------------------------------------------------------------------------------------------------------------------------|-----------------------------------------------------------------|-------------|
| 부지면적            | 3 백만 km2                                                                                                                   | 조성주체                                                            | 웰런드시 (지방정부) |
| 공단성격            |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미국 국경과 1 시간 내 인접, 도로, 철도 및 항만 시설 등 교통 요지                                                                      |                                                                 |             |
| 입주비용            | 공단임대료 1/2acre 당 C\$17,500 (Southwell 기준)                                                                                   |                                                                 |             |
| 조성현황, 입주가능시기    |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                                                                 |             |
| 교통              | 항만                                                                                                                         | Welland 운하 건착장 시설 완비                                            |             |
|                 | 철도                                                                                                                         | CN, CP 철도 서비스를 통한 미 뉴욕주 버팔로 직결                                  |             |
|                 | 공항                                                                                                                         | Niagara District Airport 보유<br>토론토 국제공항에서 차로 1 시간 거리            |             |
|                 | 도로                                                                                                                         | Hwy 406, QEW 통과, 토론토 및 버팔로 1 시간 내 연결                            |             |
| 전 력             | - Welland Hydro: 각 공단부지에 15,000 KW 전력 공급<br>- 월 50-1,000kw 사용시, 0-250 KW - C\$11.05 센트/KW<br>250-12,250 KW - C\$7.25 센트/KW |                                                                 |             |
| 용 수             | - 용수공급 1 일 2,100 m3, 하수처리 1,600 m3/일<br>- 월 수도료 기준 48.95 센트/m3                                                             |                                                                 |             |
| 통신              | Bell Canada 광섬유 통신시설 등 첨단 네트워크 완비                                                                                          |                                                                 |             |
| 인력조달 및 임금수준     | - 나이아가라 지역 내 약 16 만 명 고급인력 보유<br>- 시간당 평균 임금: 공작기계공 C\$11.02, 용접 C\$10.64, 금속연마공 C\$17.15                                  |                                                                 |             |
| 외국기업 입주현황       | TRW Canada, Atlas Specialty Steels 등 대표적 기업                                                                                |                                                                 |             |
| 한국입주 기업명단       | 한국 삼미그룹 현지법인 Atlas Specialty Steels                                                                                        |                                                                 |             |
| 입주자격 및 규제현황     | 없음                                                                                                                         |                                                                 |             |
| 우대조치            | 온타리오주 정부 및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기업 금융, 수출 및 기술개발제도 활용 가능. 시 정부 차원에서 공단부지 선정 지원                                                      |                                                                 |             |
| 입주여건에 대한 무역관 의견 | 시 관할 이외에 민간공단들이 입주업체 유치에 치열하여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입주 가능                                                                            |                                                                 |             |
| 공단연락처           | 업체명                                                                                                                        | Economic Development Office, Corporation of the City of Welland |             |
|                 | 주 소                                                                                                                        | 411 East Main Street, Welland, ON L3B 3X4                       |             |

|    |                |    |                |     |                      |
|----|----------------|----|----------------|-----|----------------------|
| 전화 | 1-905-735-1700 | 팩스 | 1-905-732-1919 | 담당자 | Mr. Dan Degazio, Mge |
|----|----------------|----|----------------|-----|----------------------|

| Gateway Industrial Park<br>Sault Ste. Marie, Ontario |                                                          |                                               |                               |
|------------------------------------------------------|----------------------------------------------------------|-----------------------------------------------|-------------------------------|
| 소재지                                                  | Sault Ste. Marie, Ontario                                |                                               |                               |
| 부지면적                                                 | 16 십만 km2                                                | 조성주체                                          | 수세마리시(지방정부) 및 Algoma 철강 (사기업) |
| 공단성격                                                 | Algoma 철강에 인접한 호반 개발지로 입주업체는 전기요금 15-20% 할인 혜택 수혜        |                                               |                               |
| 입주비용                                                 | 분양가는 1 acre 당 U\$15,000-25,000 이나 협상 가능                  |                                               |                               |
| 조성현황,<br>입주가능시기                                      | 조성 완료. 현재에도 입주 가능                                        |                                               |                               |
| 교통                                                   | 항만                                                       | Algoma 항만시설 (Marina Port Facility)            |                               |
|                                                      | 철도                                                       | Wisconsin Central 철도 및 캐나다 국철(CN) 연결          |                               |
|                                                      | 공항                                                       | 공단으로부터 15 분 거리에 대규모 활주로를 갖춘 공항 소재             |                               |
|                                                      | 도로                                                       | 미국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및 캐나다 횡단 고속도로 17 번과 연결 |                               |
| 전 력                                                  | Great Lakes Power 및 Central Gas 사가 할인율로 공급               |                                               |                               |
| 용 수                                                  | 오대호 인접으로 용수 풍부                                           |                                               |                               |
| 통신                                                   | 광섬유 통신 시설 등 통신시설 완비                                      |                                               |                               |
| 인력조달 및<br>임금수준                                       | 고기능 인력의 즉시 고용 가능                                         |                                               |                               |
| 외국기업<br>입주현황                                         | 미국 Algoma Steel<br>Georgia Pacific - Flakeboard 합작회사     |                                               |                               |
| 한국입주<br>기업명단                                         | 한국 General Metal Diffusion 社 (담당: Andrew Park, Jong You) |                                               |                               |
| 입주자격 및<br>규제현황                                       | 없음                                                       |                                               |                               |
| 우대조치                                                 | 연방 및 지방정부의 對기업 지원책 및 인근대학 등이 운영하는 인력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                                               |                               |
| 입주여건에<br>대한 무역관<br>의견                                | 인프라, 교통 및 전력, 용수 등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나 고임금 및 국내 시장협소가 애로사항      |                                               |                               |

|       |                                              |     |                                                                  |  |
|-------|----------------------------------------------|-----|------------------------------------------------------------------|--|
| 공단연락처 |                                              | 업체명 | Sault Ste. Marie Economic Development Corp.                      |  |
|       |                                              | 주 소 | 99 Foster Dr. Civic Centre Level 3, Sault Ste. Marie, ON P6A 5N1 |  |
| 전화    | 1-705-759-5432                               | 팩스  | 1-705-759-2185                                                   |  |
| 담당자   | Mr. John , Dir. Economic Development Officer |     |                                                                  |  |

| Vaughan         |                                                                      |                                                                 |                                   |
|-----------------|----------------------------------------------------------------------|-----------------------------------------------------------------|-----------------------------------|
| 소 재 지           | Vaughan, Ontario (토론토 서북경계 소재)                                       |                                                                 |                                   |
| 부지면적            | 공업지역 총<br>27,655,831m2                                               | 조성주체                                                            | 시당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 개인 및 기업이<br>분할 소유 |
| 공단성격            | 토론토 서북쪽에 인접하여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발달된 공업지역                                |                                                                 |                                   |
| 입주비용            | 소유주와 계약으로 매수, 임차 가능                                                  |                                                                 |                                   |
| 조성현황,<br>입주가능시기 | 지번에 따라 조성이 완성된 곳과 나대지 등이 혼재                                          |                                                                 |                                   |
| 교통              | 항만                                                                   | 남쪽으로 30km 거리에 위치한 토론토항을 이용                                      |                                   |
|                 | 철도                                                                   | 캐나다 국철(CN) 화물 주 분류장이 시 내부에 소재하며 Canadian Pacific 철도의 환적 터미널도 있음 |                                   |
|                 | 공항                                                                   | 토론토 국제공항이 15-30 분 거리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Buttonville 공항 소재               |                                   |
|                 | 도로                                                                   | Hwy 407, 7, 427, 27 이 남쪽에서 7 번 도로를 관통하게 됨                       |                                   |
| 전 력             | Vaughan 전력회사가 최고수준의 신뢰성 높은 고품질의 전기 공급                                |                                                                 |                                   |
| 용 수             | 온타리오호를 수원으로 하고 있어 용수가 풍부, 하수시설도 완비                                   |                                                                 |                                   |
| 통신              | 광섬유 통신망 및 100% 디지털 교환 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시설이 광통신 시설인지의 여부는 즉시 확인 가능함 |                                                                 |                                   |
| 인력조달 및<br>임금수준  | 약 65,000 명의 노동력을 갖고 있으며 인근 광역 토론토 지역에는 2 백만의 노동인구가 있음                |                                                                 |                                   |
| 외국기업<br>입주현황    |                                                                      |                                                                 |                                   |
| 한국입주<br>기업명단    | 한국 한화그룹, 현지 제조합작법인 Acan Windows                                      |                                                                 |                                   |
| 입주자격 및<br>규제현황  | 입주에 앞서 Vaughan 시 관계자와 도시계획법에 관한 사전 협의를 가져야 함                         |                                                                 |                                   |
| 우대조치            | 없음                                                                   |                                                                 |                                   |

|                       |                               |                                   |                                                            |
|-----------------------|-------------------------------|-----------------------------------|------------------------------------------------------------|
| 입주여건에<br>대한 무역관<br>의견 |                               | 토론토 인근지로 소비층이 두터우며 양질의 노동력을 지닌 지역 |                                                            |
| 공단연락처                 |                               | 업체명                               | Economic & Technology Development Dept.<br>City of Vaughan |
|                       |                               | 주 소                               | 2141 Major Mckenzie Dr., Vaughan, ON                       |
| 전화                    | 1-905-832-8521                | 팩스                                | 1-905-832-6248                                             |
| 담당자                   | Mr. Frank Miele, Commissioner |                                   |                                                            |